

〈훈련결과보고서〉

**중남미 지역의
지재권 침해 및 보호에 관한 연구**
- 칠레 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 7월

**특 허 청
박 상 균**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칠레
2. 훈련기관명 : 알베르토 우루따도 대학교(Universidad Alberto Hurtado)
3. 훈련분야 : 학위과정
4. 훈련기간 : 2018.8.27.~2020.8.26.

<훈련 기관개요>

I. 기관 개요

- 훈련기관명 : 알베르토 우루따도 대학교(Universidad Alberto Hurtado)
- 인터넷 웹주소 : <https://www.uahurtado.cl/>

II. 기관소개

○ 연혁

- Universidad Alberto Hurtado는 486년의 예수회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공공 비영리 기관으로서, 1997년 10월 20일 설립되었으며, 세계 65개국에 걸친 200여개의 고등교육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음
- 이 학교는 칠레의 성자이고 예수회 성직자이자 변호사 및 교육학 박사인 Alberto Hurtado Cruchaga의 이름을 따서 교육에서 그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음
- 학부별로 사회과학부, 경제학부, 법학부, 교육학부, 철학 및 인문학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소속대학 개요

- 본 대학은 칠레의 산티아고에 위치(Almirante Barroso 10, Santiago)하고 있으며, 시내 중심지인 Los Heroes(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우수함.
- 소속학과 : 사회과학부의 Gobierno y Sociedad 과정

○ 입교 교섭자료

- 입학 절차

- 대학원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자가 신청서를 보내주며, 이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메일을 통해 입학승인.

- 필요서류

- 필수 서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력서, 여권 사본 등

<차 례>

I. 서론	7
II. 중남미 지역의 이해	9
1. 중남미 지역 개관	9
2. 칠레의 제반 환경	11
3. 칠레 시장 분석	15
4. 한국·칠레 경제 협력	22
III. 칠레의 지식재산권	26
1. 칠레의 지식재산권 보호형식	26
2. 칠레의 부정경쟁 관련 규정	37
3. 칠레 지식재산권 동향	41
4. 칠레의 지식재산권 개정 방향	42
IV. 중남미 지역에서의 지식재산권	52
1. MERCOSUR & 칠레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52
2. 중남미지역에서의 상표권 등록 관리	61
V. 칠레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보호현황	67
1. 칠레의 지식재산권 현황	67
2. 칠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의 범주	69
3. 칠레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70
4. 칠레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시 구제방법	81
VI.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해외 활동 현황	88
1. 산업재산권	88
2. 저작권	90

3.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90
4. 신지식재산	91
VII. 중남미 지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 대책	92
1. 기업별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전략	92
2. 중남미 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역량 제고	97
3. 결론	101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103

I. 서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 정세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냉전체제가 종식¹⁾되고 국제관계가 다극화되면서 각국은 독자노선을 걸으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국제관계도 새롭게 개편되고 있다. 과거의 우방이 현재와 미래에도 영원한 우방이 될 수 없고, 과거에 적대적이었던 관계도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손을 잡을 수 있는 관계로의 개선이 가능해졌다. 더구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변화의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었는데, 이는 국제관계에서 물리적인 거리의 중요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지리적인 요소가 경제나 무역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최근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과 정치적인 문제나 역사적인 문제로 인한 관계에서 종종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에 인접한 국가로서 무역량이나 문화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국제관계나 역사적 문제로 인해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었다.²⁾ 우리나라의 2019년 중국과 일본의 교역량은 각각 23.3%와 7.3%³⁾로 1위와 3위에 해당한다. 2위인 미국(12.9%)을 제외하곤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교역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접국과의 갈등상황이 반복될수록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남미와 같이 역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과의 경제와 무역의 협력관계 향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들어 중남미지역의 일부 국가(칠레, 페루, 콜롬비아)들과 FTA 협정도 체결하며 점차 외교관계를 확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브라질 등의 중남미 국가들과의 교역량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낮은 하

1) 1989년 12월 고르바초프는 미국 대통령 부시와 지중해의 말타섬의 회담에서 핵무기의 감축에 합의하고, '냉전의 종결'을 선언했다.

2) THAAD사태로 인한 중국의 限韓令이나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등.

3) 자료: 한국무역협회

지만 이 지역의 인구와 자원 등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류 문화가 널리 알려지면서 이에 따라 한국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인지도도 동반 상승하여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중남미 지역과의 무역이 증가할수록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이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2019년 발간한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집행과 보호현황을 검토한 보고서인 2019 Special 301 Report에 따르면 칠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는 우선감시대상에 해당할 정도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상황이 불만족스럽고, 이 외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 역시 감시대상국에 해당된다고 발표하였다.⁴⁾ 이는 향후 교역이 증대되고, 국내 문화 콘텐츠가 알려질수록 불법적인 복제나 위조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중남미지역의 지식재산법을 알아보고 이 지역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침해 현황을 분석하여 추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4)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Special 301 Report April. 2019.

II. 중남미 지역의 이해

1. 중남미 지역 개관⁵⁾

중남미 지역은 33개국과 6억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국가로는 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이 있다. 최근까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격변을 겪어오면서 발전이 다소 더딘 측면이 있으나, 막대한 광물, 에너지, 생물자원의 보고로서 점차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영향력을 키워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남미의 각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외교적으로 한국의 국제정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FTA(칠레, 페루, 콜롬비아)의 체결과 지역경제 블록의 활성화에 따라 무역증대의 기회가 나날이 증가되어 가고 있다.

이 지역은 특히 천연자원이 매우 풍부한데 그 예를 들어보면, 석유·천연가스 등 각종 광물자원, 풍력 및 수력 에너지원, 풍부한 해양수산자원, 풍부한 바이오 연료 자원, 차세대 전력에너지 리튬, 전 세계 생물자원의 50%의 보유와 체계적인 산림자원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다면, 국내 경제발전의 불확실성을 없애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남미 지역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역사적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중남미 지역은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래 제국주의 국가들을 위한 원자재 공급국으로 전락했으나, 이후 불완전한 독립과 더불어 국제경제에 편입하게 되고, 여러 정치적인 격변을 겪으며 새로운 좌파정부와 새로운 우파정부의 발전 모델이 혼재하는 다소 복잡한 형태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쟁으로는 태평양전쟁(칠레-페루-볼리비아)⁶⁾ 있는데, 이 전쟁의 결과로 칠레는 볼리비아 해안 전역을

5) 라틴아메리카의 이해. 2017. 하상섭(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6) 칠레·볼리비아·페루 사이에 벌어진 전쟁(1879~83) : 태평양 해안의 귀중한 분쟁지역 영토가 칠레에 합병되는 결과로 끝났다. 전쟁은 남아메리카의 태평양 해안지역으로 남위 23~26°에 자리 잡은 아타카마

연계 되지만 이로 인해 3국은 현재까지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남미 지역은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대공황으로 원자재 수출이 감소하고 외화가 부족해지자 내구성 소비재 중심의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을 실시했다. 이후 멕시코가 매년 고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농작물이나 광산업 분야에 집중되는데 불과하고, 자본이나 노동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선진 공업 국가들로부터 자본과 기술원조가 필요하다보니 오히려 서구 외국 자본의 지배가 강화되는 사태가 초래되어 한계가 있었다. 1980년대 중남미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금융자유화, 경쟁 환율제, 외국인 직접투자 자유화, 민영화, 탈규제화 등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전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실질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이 증가되며 좌파정부 집권 증가의 정치 경제적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⁷⁾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남미 지역에는 지역별로 다양한 경제 공동체들이 부상하였으나, 중남미 지역에서의 오랜 경제통합 실험은 빈번한 정치경제적 혼란과 경제주권 포기를 우려한 회원국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명맥 유지에 급급하고, 기존 통합체의 발전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21세기 들어서는 중남미 지역을 넘어 다른 대륙들과의 개방된 지역주의를 추구하고 있다.(PA와 TPP연계)⁸⁾ 하지만 중남미 지역은 빈곤과 사회 불평등, 경제적 문제, 사회적 저항이 지속될 뿐 아니라 마약, 불법이민 문제 등이 불거져 새로운 갈등으로 발전할 우려가

사막 일부의 영유권을 둘러싼 칠레와 볼리비아의 분쟁에서 비롯되었다. 그 땅에는 귀중한 광물자원, 특히 질산나트륨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페루는 수천 명의 인명과 엄청난 재산손실을 겪었으며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뒤이어 7개월에 걸친 내전이 벌어졌다. 그 뒤로도 수십 년간 페루는 경제적인 불안정에 시달렸다. 1884년에 볼리비아와 칠레는 휴전협정을 맺고 초석과 구리 등 광산업의 이권을 포함하여 볼리비아 해안 전역(안토파가스타 주)을 칠레에 넘겨주었다. 1904년에 이 협정을 영구화하는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대가로 칠레는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와 아리카 항구를 연결하는 철도를 부설해주고 볼리비아 상인들에게 칠레의 항구와 영토에서 자유통행권을 보장해줄기로 했다. 그러나 볼리비아는 대서양 해안으로 이어지는 라플라타 강 수로를 통해 내륙국의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이런 노력은 결국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사이의 차코 전쟁(1932~35)으로 이어졌다. <다음백과사전 참조>

7) 라틴아메리카의 이해. 2017. 하상섭(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8) 중남미 공동체 : 안데스공동체(CAN, 1969), 카리브공동체(CARICOM, 1973), 중미경제통합시스템(SICA, 1991), 남미공동시장(MERCOSUR, 1995), 미주를 향한 볼리바르 동맹(ALBA, 2004), 남미국가연합(UNASUR, 2008)

매우 심한 편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⁹⁾

2. 칠레의 제반 환경

가. 정치 환경¹⁰⁾

- 2018~2022년 親기업 신정부 집권으로 임기 내 경기 활성화 정책 수행 전망
 - 피네라 대통령은 당선당시 핵심 대선공약으로 칠레의 선진국 대열 합류를 강조하였으며, 그 방안으로 조세개혁, 교역 활성화, 인프라 구축 및 광업 다각화, 사회복지정책 개편 및 확대를 제시함. 이로 인해 정권 내 경기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형성됨

- 2019년 4분기 연이은 시위 및 국가 비상사태 발령
 -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인상을 계기로 2019년 10월 7일에 시작된 시위가 18일 과격 시위로 번지면서 산티아고를 포함한 칠레 다수의 지역에 비상사태(군 통제권 부여, 통행금지 발령가능) 선포
 - 연이은 시위로 2019년 개최 예정이었던 APEC, COP25 회의가 취소되는 등 시위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적 여파가 지속될 전망
 - ※ 회담 취소가 발표된 이후 칠레 증시 2.8% 급락(4,880.87 → 4,744.13)
 - 또한, 이로 인해 현지 세관, 통관 및 운송 등이 지연되고 있으며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중장기적인 악영향 예상

나. 경제 환경¹¹⁾

- 칠레 환율과 구리 가격은 반비례 관계 유지
 - 칠레는 구리를 포함한 원자재 중심의 수출구조로 인해 국제 원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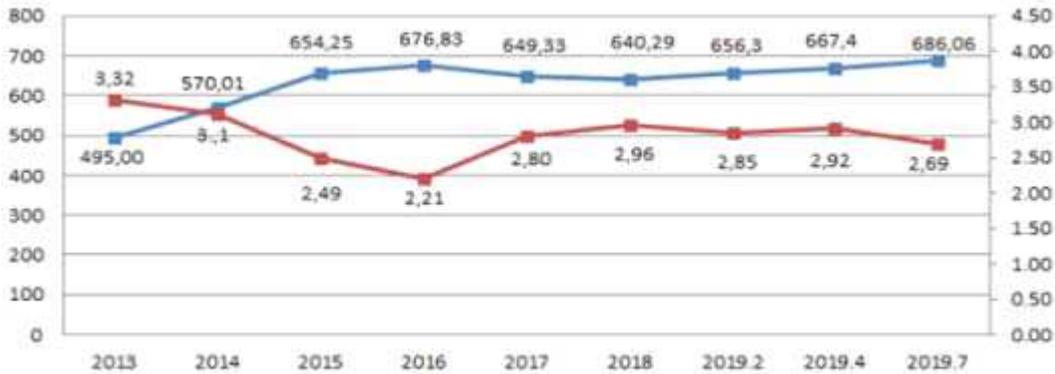
9) 멕시코 치아빠스 사파티스타 혁명운동,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 브라질의 무토지 농민 운동, 볼리비아 코카잎 재배 농민운동, 칠레 학생운동, 아르헨티나 실업자 운동, 불법이민 문제 그리고 최근 칠레 사태(2019.10 ~)등이 있음

10) KOTRA. 2020. 2020년 국별진출전략(칠레)-KOTRA. 7p.

11) KOTRA. 2020. 2020년 국별진출전략(칠레)-KOTRA. 7p.

의 수요 및 가격, 기준금리 등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전통적으로 구리 가격과 환율은 반비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칠레 환율 및 구리 가격 동향



자료 : 칠레중앙은행, 칠레구리공사, 2019년 7월 기준

○ 경기활성화를 위한 저금리 유지 추세

- 칠레 정부는 2016년까지 3.5%였던 금리를 2017년 12월 2.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저금리정책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2019년 9월에 금리를 2%로 인하했고, 2019년 10월에 0.25% 추가 인하로 1.75% 금리를 유지 중

○ 물가상승률 둔화

- 칠레의 2019년 상반기 칠레의 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 목표치인 3%의 절반에 해당하는 1.6%로 집계되었으며, 12개월 누적치는 2.3%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 지속적인 폐소가치의 하락과 이민으로 인한 노동력 공급의 증가가 낮은 물가상승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실업률은 고질적인 국가 문제로 꼽히고 있음

- 칠레는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에 힘입어 중남미에서 에콰도르, 페루에 이어 세 번째로 실업률이 감소한 국가이나 여전히 6%~7%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단, 비공식적인 고용증가와 지속적인 이민의 증가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실업률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다. 산업 환경¹²⁾

○ 칠레 산업구조

칠레 국내총생산(GDP) 구성

(단위 : 백만 페소, %)

연번	분야	2017년			2018년		
		금액	비중	증감	금액	비중	증감
	국내총생산 총계	180,211			191,249		
1	농림축산업	5,827	3	99	5,929	3	102
2	수산업	1,155	1	131	1,037	1	90
3	광업	17,419	10	128	18,813	10	108
3.1	(구리)	15,765	9	131	17,048	9	108
3.2	(기타 광물)	1,654	1	100	1,764	1	107
4	제조업	18,895	10	102	20,362	11	108
4.1	(식품)	6,020	3	111	6,489	3	108
4.2	(담배, 음료)	2,375	1	96	2,605	1	110
4.3	(직물, 의류, 피혁)	360	0	97	306	0	85
4.4	(목재, 가구)	1,112	1	96	1,118	1	101
4.5	(펄프, 제지, 인쇄)	1,705	1	109	2,366	1	139
4.6	(정유)	1,529	1	93	1,484	1	97
4.7	(화학고무, 플라스틱)	2,152	1	97	2,154	1	100
4.8	(비철 및 기초금속)	780	0	91	796	0	102
4.9	(기계, 장비)	2,861	2	100	3,043	2	106
5	전기, 가스, 수도	5,354	3	103	5,623	3	105
6	건설업	11,682	6	101	12,509	7	107
7	도소매업	16,846	9	104	17,685	9	105
8	호텔, 요식업	3,953	2	111	4,274	2	108
9	운송업	8,885	5	99	9,188	5	103
10	정보통신업	4,816	3	103	4,584	2	95
11	금융서비스업	8,353	5	106	9,098	5	109
12	기업서비스업	17,610	10	102	18,851	10	107
13	주거서비스업	14,141	8	110	15,180	8	107
14	개인서비스업	21,029	12	107	22,971	12	109
15	공공행정	8,687	5	106	8,874	5	102
16	국내총생산 소계	164,653	91	106	174,978	91	106
17	부가가치세	14,739	8	107	15,441	8	105
18	관세	820	0	118	830	0	101

자료 : 칠레 중앙은행(경상가격 기준) 자료 재구성 (2019년10월)

- 칠레 산업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광업이며, 2018년 기준 광업이 칠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

12) KOTRA. 2020. 2020년 국별진출전략(칠레)-KOTRA. 9p.

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수준이나, 광산업을 위한 금융,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도소매업도 발달해 있어 실제로 광업이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큼

라. 정책·규제 환경¹³⁾

○ 환경을 중요시하는 문화로 환경규제 많음

- 칠레 환경부(MMA)와 수도권 지역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Santiago Respira(산티아고는 숨 쉰다) 프로젝트”는 교통, 산업, 주거 전반을 아우르는 민·관 협력 대기오염 억제 프로젝트로 2018년에 시행

※ 대표적으로 교통 분야에서 2012년 이전 촉매 컨버터 탑재차량 동절기 운행 제한, 산업 분야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대폭 강화, 주거 분야에서는 취사 및 난방용 화목(火木) 사용 전면 금지 등을 시행

- 이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 비율 등 환경과 관련된 정책이 많은 편

○ 칠레 프로젝트 시장 진출 시 환경영향평가제도 유의 필요

- 칠레 정부는 1997년 수립된 법률 19,300호와 2010년 개정된 법률 20,417호를 통해 신규 또는 변경 건설 및 설비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제도(SEIA)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칠레 정부는 인프라 건설로 인한 지역사회, 자연 및 문화의 훼손을 예방하고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

- 환경영향평가 대상 분야는 광업, 제조업, 임업, 댐 건설, 배전망, 3MW 이상의 발전소, 터미널, 철도, 도로, 항만, 공항, 관광시설 등 21개 분야로 나뉨

※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득한 프로젝트도 변형 또는 추가 건설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 다시 환경영향평가 필요

- 칠레 환경영향평가는 더딘 심의와 강력한 시민참여 등의 이유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며, 이로 인해 대형 프로젝트들이

13) KOTRA. 2020. 2020년 국별진출전략(칠레)-KOTRA. 10p.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 중

3. 칠레 시장분석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¹⁴⁾

- (중남미 우량국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도, 국가경쟁력 중남미 최상위권
 - 칠레는 남미 국가 최초 OECD 가입국으로 2019년 4월 기준 1인당 GDP가 약 US\$ 15,778로 역내 3위(1위 우루과이, 2위 파나마)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신용평가사 국가신용도(AA-)와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역내 1위를 차지
 - ※ WEF 국가경쟁력(141개국 대상, 2019년 기준) 주요 순위 : 싱가포르(1위), 미국(2위), 한국(13위), 칠레(33위), 멕시코(48위)

- (높은 대외개방도) 경제영토 세계 1위 및 아시아국가 교역 비중 확대
 - 칠레는 64개국과 26건의 경제협정을 체결하였으며(세계 GDP의 86.3%규모), 2018년 3월 11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서명함
 - ※ CPTPP 11개 회원국 : 칠레, 페루, 멕시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 또한, 칠레는 2004년 한국과의 FTA 발효 이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교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교역 비중을 전체 수출의 45%까지 확대함

- (광물 및 신재생 자원 부국) 구리, 리튬 세계매장량 및 일조량 세계 1위
 - 칠레는 구리, 리튬, 요오드, 은, 레늄, 몰리브덴 등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구리와 리튬은 세계 매장량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광업은 칠레 전체 수출의 45%로 칠레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임

14) KOTRA. 2020. 2020년 국별진출전략(칠레). 11p.

- 또한, 칠레 북부는 세계에서 가장 일조량이 많은 지역이며 이밖에 130개가 넘는 화산과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으로 인하여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한 여건도 매우 우수

나. 교역¹⁵⁾

칠레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출	금액	76,791	76,290	74,210	62,042	57,738	65,883	75,404
	증감	-4.9	-0.7	-2.7	-16.4	-6.9	14.1	14.5
수입	금액	70,566	71,578	65,423	56,963	53,344	59,484	67,710
	증감	6.6	1.4	-8.6	-12.9	-6.4	11.5	13.8
무역수지	금액	6,225	4,713	8,786	5,078	4,394	6,399	7,694

자료 : Global Trade Atlas (2019년 10월)

○ 칠레의 국가별 수입 동향

- 2018년 수입액 기준 칠레의 주요 수입 대상 국가는 중국,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 멕시코, 일본, 한국 순
 - ※ 특히 중국은 2006년 10월 칠레-중국 FTA 발효를 계기로 교역이 활기를 띠어 2007년부터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을 추월, 2위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여 2015년부터는 미국을 제치고 1위 수입대상국 자리 차지
 - ※ 일본은 2007년 9월 칠레와 체결한 FTA가 발효되었으며, 그 후 2008년부터 일본산 제품의 칠레시장 진출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타이어 등의 제품에서 우리 제품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
- 2018년 칠레의 총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83%가 증가
 - ※ 최근 인도네시아와의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17.12.14)로 차후 칠레의 대인도네시아 수입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15) KOTRA. 2020. 2020년 국별진출전략(칠레). 12p.

칠레 10대 수입대상국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명	수입액			비중			18/17 증감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53,344	59,484	67,710	100	100	100	13.83
중국	12,461	13,336	15,100	23.36	22.42	22.3	13.23
미국	9,433	10,819	12,883	17.68	18.19	19.03	19.07
브라질	4,731	5,636	6,517	8.87	9.47	9.62	15.64
아르헨티나	2,524	2,908	3,368	4.73	4.89	4.97	15.85
독일	2,227	2,548	2,823	4.17	4.28	4.17	10.79
멕시코	1,890	2,030	2,298	3.54	3.41	3.39	13.21
일본	1,578	1,659	2,001	2.96	2.79	2.96	20.65
한국	1,625	1,782	1,685	3.05	3.00	2.49	-5.45
에콰도르	995	1,455	1,624	1.86	2.45	2.4	11.64
스페인	1,484	1,364	1,600	2.78	2.29	2.36	17.34

자료 : Global Trade Atlas (2019년 9월)

○ 칠레의 품목별 수입 동향

- 칠레의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 기계, 자동차, 전자기기, 플라스틱 등으로 에너지 및 공산품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칠레의 국가별 수출 동향

- 2018년 칠레의 수출은 전년대 비 14.45% 증가한 75,404백만 달러 기록
- 2018년 칠레의 주요 수출 대상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순
2014년에 한국은 대 칠레 10개 수입품목 중 8개 품목의 수입액이 6.8% 증가하면서 칠레 4위 수출 대상국가로 등극

칠레 10대 수출대상국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명	수출액			비중			18/17 증감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57,738	65,883	75,404	100	100	100	14.45
중국	16,299	17,951	24,495	28.23	27.25	32.48	36.46
미국	8,161	9,656	10,519	14.13	14.66	13.95	8.94
일본	5,035	5,765	6,827	8.72	8.75	9.05	18.42
한국	4,047	4,079	4,360	7.01	6.19	5.78	6.89
브라질	2,891	3,828	3,436	5.01	5.81	4.56	-10.26
페루	1,480	1,626	1,815	2.56	2.47	2.41	11.63
스페인	1,326	1,651	1,690	2.3	2.51	2.24	2.35
네덜란드	1,579	1,593	1,563	2.73	2.42	2.07	-1.89
캐나다	959	1,315	1,563	1.66	2	2.07	18.9
인도	1,399	1,742	1,488	2.42	2.64	1.97	-14.59

자료 : Global Trade Atlas (2019년 9월)

○ 칠레의 품목별 수출 동향

- 칠레의 주요 수출품목은 구리, 광석, 생선, 과일, 펄프 등
 - ※ 주력 수출품목 중 생산기준 구리, 레늄, 리튬 등은 세계 1위, 펄프, 몰리브덴은 세계 3위이고, 수출기준 포도, 건포도는 세계 1위, 아보카도는 세계 2위, 키위는 세계 3위를 기록
 - ※ 칠레 수출의 대부분이 광물과 농수산물에 집중되어 있어 국제가격 등락에 따라 수출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안정적인 수출기반 확보가 필요한 상황

○ 칠레 수입규제 현황

- 칠레 정부는 음란물 등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상품, 독성 산업폐기물 등 기본적인 수입금지 품목 이외에 중고자동차, 중고 오토바이, 중고 또는 재생 타이어, 모든 종류의 석면류, 보건부, 농림부 등 정부기관에서 지정한 수입금지 품목, 동물, 농업 및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예: 톨루엔 및 휘발성 솔벤트로 제조된 접착제를 사용한 유아용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아래 표와 같은 특정품목의 경우 소관 기관의 허가 또는 인증 필요

칠레 수입 허가/인증 필요 품목 현황

품목	해당 기관
무기, 탄약, 폭발물, 질식성 화학제품 등	국방부 산하 병무청 (DGNM: Direccion General de Movilizacion Nacional) * 홈페이지: www.dgmn.cl 참고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무술 교습서 및 영상 교재	
알코올, 알코올음료 및 식품	농림부 산하 농목축청 (SAG: Servicio Agricola y Ganadero) * 홈페이지: www.sag.cl 참고
동식물 가공 식품 및 파생상품	
식품 및 식물에 유해한 물품	
동물 및 동식물 쓰레기	
비료 및 살충제	보건부 산하 공공보건청(Instituto de Salud Pública) * 홈페이지: www.ispch.cl 참고
식품	
의약품, 의료용 또는 미용 식품, 화장품, 마취제 및 유해물질 환각제	
방사능물질, 방사능 유발 도구 및 장비	칠레 원자력 위원회 (Comision Chilena de Energia Nuclear) * 홈페이지: www.cchen.cl 참고
수산물	농수산차관실(Subsecretaria de Pesca y Acuicultura) * 홈페이지: www.subpesca.cl 참고
수산물 자원(관상용 포함)	
무선통신장비(주파수 사용에 대한 사전취득 필요)	교통통신부 산하 통신차관청(SUBTEL) * 홈페이지: www.subtel.cl 참조
야생동물국제협약(CITES)에서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동식물	야생동물국제협약(www.cite.org)과 소관부처
시멘트	주택도시계획부(Ministerio de Vivienda y Urbanismo)에 등록된 건설품질기술검사소에서 관련 품질 증명서(Certificado de Calidad)를 선발급받아야 함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다. 투자진출¹⁶⁾

○ 외국인 기업에 대한 차별 없으며, 투자에 매우 개방적

- 칠레 정부는 1974년 DL600(외국인투자법령) 제정 및 2016년 신 FDI 법(법률 20,848호) 발효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매우 개방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칠레 FDI 유입(백만 달러) 동향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투자 유입액	23,671	20,011	11,942	6,856	7,160

자료 : UNCTAD Statistics 무역권 재구성 (2019년 9월)

○ 투자에 개방적이나 진입장벽 다수 존재

- (제조용 부품 조달 애로) 칠레는 제조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칠레

16) KOTRA. 2020. 2020년 국별진출전략(칠레). 15p.

를 기반으로 중남미 진출확대를 희망하는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류 등의 제조업체가 투자를 희망할 경우 연관 산업 부재로 부품 현지 조달에 어려움 예상

- (높은 에너지 가격과 수급 불안) 칠레는 에너지의 60%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이 높고 수급도 불안한 편
- (현지 산업 및 유통기업 독과점에 따른 진입장벽) 칠레의 은행, 통신, 전력, 수도, 인프라 등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유럽 및 미국계 다국적기업이 장악
 - ※ 칠레의 최대 산업인 광업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높은 시장 점유율
 - ※ 유통의 경우 Cencosud와 Falabella 등의 대형유통망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후발주자인 신규 기업의 칠레 시장 진입에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 존재
- (환경영향평가 강화로 프로젝트 진출 애로) 칠레에서 광업, 제조업, 임업, 댐 건설, 배전망, 발전용량 3MW 이상의 발전소, 터미널, 철도, 도로, 항만, 공항, 관광시설 등 21개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칠레 환경평가원(SEA)의 심의 및 승인 필요
 - ※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의 더딘 심의와 승인으로 인해 대형 프로젝트들이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발생

라. 인프라 프로젝트¹⁷⁾

○ 교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 칠레 정부는 산티아고 지하철 2, 3, 4호선 연장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 신규 지하철 7호선(Renca부터 Vitacura까지), 8호선(Av Macul부터 La Florida Oriente까지), 9호선(Av Santa Rosa부터 La Pintana까지) 건설을 2026년까지 마무리할 예정
- 이 외에도, 산티아고와 외곽도시를 연결하기 위한 산티아고 - 메이

17) KOTRA. 2020. 2020년 국별진출전략(칠레). 16p.

피아(Santiago-Melipilla) 철도 건설, 산티아고-바투고(Santiago-Batuco) 철도 건설, 산티아고-발파라이소 고속열차(Tren Valparaíso Santiago, 이하 TVS) 건설이 진행될 예정

- 산티아고-발파라이소 고속열차의 경우, 이전 정부에 의해 CREC (China Railway Group Limited, Sigdo Koppers, Latinoamérica Infraestructura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회사)가 프로젝트 운영사로 선정되었으나, 피네라 신정부는 국가 입찰법에 따라 2019년 중으로 국제 입찰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 운영사를 선정하기로 변경함. 이로 인해, TVS의 예상 투자 규모가 16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크게 증가
- 2023년까지 주요 도시의 전동차와 케이블카 신설을 위한 입찰 예정

○ 도로건설 프로젝트

- 칠레 북부 아리카(Arica)부터 남부 칠로에(Chiloe)까지 연결하는 3,364km 길이의 5번국도(Ruta 5)의 기존 양허계약이 구간별로 2020~2024년 사이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따라, 각 구간별 보수 및 도로 확장을 위한 신규 입찰이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
- 또한, 각 지방 도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입찰과 장벽 없는 칠레(Chile sin barreras) 전략 하에 실시되는 고속도로 입찰이 68번, 78번, 5번 도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
- ※ 장벽 없는 칠레(Chile sin barreras) 전략: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무정차통행료시스템을 설치하여 산티아고와 연결된 외곽도로의 도로정체와 사고를 줄이고, 도시 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계획

○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공항 및 항만 증축 프로젝트

- (공항) 칠레 내의 유동인구 증가로 공항 증축공사가 산티아고 국제공항 외 네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아타카마(Atacama), 라세레나(La Serena)등 다섯 개의 공항의 양허계약이 종료될 예정에 있어 신규 운영사 선정을 위한 입찰 예정
- (항만) 인근 국가의 국제교류 증가로 인해 칠레 항구의 이용률이 늘

어나, 산티아고에서 한 시간 반 거리에 있는 산 안토니오(San Antonio)의 “대형 항구(Puerto de Gran Escala)건설 입찰“이 2020년에 진행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

4. 한국·칠레의 경제 협력

가. 교역¹⁸⁾

○ 한-칠레 교역 동향

- 우리나라와 칠레의 교역관계는 2004년 양국 간 FTA 발효를 계기로 교역량이 약 4배 증가하는 등 크게 활성화되기 시작함.

※ 한국산 제품들은 자동차, 기계류, 플라스틱 제품 등 여러 품목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은 칠레와 안정적인 교역 중

한국의 대(對)칠레 주요 수출품목

(단위 : 천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17년		2018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87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866,603	1.2	880,993	1.7
2	84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그 부분품	105,501	-34.5	124,693	18.2
3	27	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100,609	-16.1	267,220	165.6
4	89	선박과 수상 구조물	1,540	0.0	4	-99.7
5	85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92,674	-1.6	83,172	-10.3
6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94,328	-7.1	133,009	41.0
7	25	소금, 황, 토석류, 석고·석회·시멘트	17,723	-20.8	47,096	165.7
8	72	철강	22,910	-21.6	22,519	-1.7
9	29	유기화학품	31,212	61.2	29,941	-4.1
10	73	철강의 제품	21,213	-26.4	14,864	-29.9
11	40	고무와 그 제품	26,060	-10.5	24,006	-7.9
12	90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측정기기·정밀기기·의료용기기	19,661	-4.0	16,957	-13.8
13	28	무기화학품, 귀금속	3,423	20.2	13,021	280.4
14	74	구리와 그 제품	14,116	-31.1	8,485	-39.9
15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 등	11,333	74.0	8,897	-21.5
16	55	인조단섬유	10,903	17.1	13,743	26.0
17	56	워딩·펠트·부직포 등	7,271	10.0	9,458	30.1
18	30	의료용품	5,209	12.8	7,007	34.5
19	48	종이와 판지와 그 제품	6,208	-27.6	13,353	115.1
20	94	가구, 침구·매트리스·쿠션 등	3,333	-17.1	3,086	-7.4

자료 : KOTIS 무역통계 (2018년 12월)

18) 2020년 국별진출전략(칠레)-KOTRA. 18p.

한국의 대(對)칠레 주요 수입품목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 코드	품목명	2017년		2018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26	광·슬래그·회	1,328,744	52.2	1,821,511	37.1
2	74	구리와 그 제품	1,235,099	-12.1	1,163,910	-5.8
3	28	무기화학품·귀금속	298,830	51.3	439,326	47.0
4	47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263,201	9.6	295,211	12.2
5	44	목재와 그 제품, 목탄	135,605	19.0	141,449	4.3
6	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158,651	-5.8	171,036	7.8
7	2	육과 식용 설육	119,464	-1.2	132,885	11.2
8	3	어류·갑각류	101,750	24.4	146,051	43.5
9	23	식품 공업 잔재물, 조제 사료	49,612	-1.1	47,674	-3.9
10	22	음료·주류·식초	40,664	-1.2	46,314	13.9
11	20	채소·과실·견과류	17,732	4.5	18,037	1.7
12	11	제분공업의 생산품	6,144	-3.8	93	-98.5
13	4	낙농품·새의 알·천연꿀	5,812	89.9	3,408	-41.4
14	15	동물성, 식물성 지방과 기름	4,946	84	4,272	-13.6
15	12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7,178	30	8,825	22.9
16	68	돌·플라스터·시멘트·석면 등	2,991	353.9	1,729	-42.2
17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3,418	5.7	2,416	-29.3
18	16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2,224	-10.3	3,001	34.9
19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079	-12.6	1,439	33.4
20	5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1,151	18.5	1,684	46.3

자료 : KOTIS 무역통계(2018년 12월)

나. 투자¹⁹⁾

○ 양국 간 교역규모에 비해 투자진출은 미미하나 FTA 후 투자 점진적으로 늘어나

- 우리나라는 칠레의 5대 교역국에 포함될 정도로 칠레와 활발한 교역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투자 분야에서는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함

※ 칠레 외국인 투자 위원회의 집계에 따를 경우 1974년부터 2013년까지 D.L.600 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위원 회의 허가를 받은 한국의 투자 규모는 대(對)칠레 총 외국인 투자액의 0.2%에 불과함. 다만 우리나라 기업의 대(對)칠레 투자건수는 2004년 한-칠레 FTA를 발효 이후 증가

○ 광업 분야에 투자집중, 분야별 구분에는 큰 의미 없어

- 한국수출입은행 투자금액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칠레 투자는 업종별로 광업 69.1%, 도소매업 15.3%, 제조업 7.4%, 건설업 5.5% 등의 분포를 나타냄

※ 다만, 고려해야 할 것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투자와 현지 금융을 통한 투자

19) 2020년 국별진출전략(칠레)-KOTRA. 20p.

액, 투자 청산액 등이 제외되어 있는 점

- 칠레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주로 판매법인과 지사 형태로 진출해 있으며, 전자, 자동차, 타이어, 플랜트, 의료 위주의 진출에서 광업, 에너지 등으로 진출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음

○ 칠레 투자진출 사례

- 제조업 분야로는 1993년 이견산업이 목재 가공업을 위해 진출하였고 2007년에는 신광목재 투자진출(2015년 철수)
- 포스코 건설은 미국계 전력회사인 AES Gener 社의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EPC 입찰을 수주하여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2006년 하반기에 칠레에 사무소를 개설
 - ※ 포스코 건설은 2006년 벤탐나스 석탄화력발전소 수주를 시작으로 2019년 까지 총 6개의 대형

○ 화력발전소 완공을 통해 입지 확장

- 2013년에는 SK건설이 Red Dragon 석탄 화력발전소(12억 달러)를 수주하는데 이어, 남부발전 컨소시엄이 Kellar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IPP 프로젝트(6억 달러)를 수주했으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칠레의 국책사업인 차카오대교 건설프로젝트(74억 달러)를 2014년에 수주하면서 칠레 프로젝트 시장 내 우리기업의 점유율을 확장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1년 칠레 엔엑스우노(NX1) 리튬광산 개발사업을 위해 삼성물산과 컨소시엄을 구성, 칠레 코피아포의 지분 30%를 인수하였고, 산토도밍고 동광 프로젝트도 참여하고 있음. LG상사는 에너지기업 지오파크(Geopark)의 지분 20%를 인수하여 칠레 원유 및 가스 개발에 참여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²⁰⁾

○ 한-칠레 FTA 개정 협상 중

- 한국은 2003년 2월 15일 칠레와 전 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FTA를

20) 2020년 국별진출전략(칠레)-KOTRA. 23p.

체결, 2004년 4월 1일 발효

※ 2016년 타이어,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 조명기구 등 13년 유예품목에 대한 관세까지 철폐되면서 현재 총 7,838개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음

※ 하지만 FTA 협상 당시 한국 측은 사과, 배, 고추, 마늘 등 일부 농산물을 개방하지 않았고, 칠레도 자국산업 보호 차원에서 냉장고, 세탁기 등을 비롯한 총 96개 품목을 FTA 무관세 제외 품목으로 지정

한-칠레 FTA 관세철폐 및 주요 무관세 제외 품목

(단위 : 개, %)

유형	전체		주요 무관세 제외 품목
	품목 수	비중	(HS 코드) 품목명
즉시	3,540	44.6	(8418.10) 냉장·냉동고
3년 후	1	0	(8450)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
5년 후	2,467	31.0	(4012.10) 재생타이어
7년 후	20	0.3	(4012.20) 중고 공기타이어
10년 후	1,520	19.2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13년 후	290	3.7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무관세 제외	96	1.2	(1101)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계	7,934	100.0	(2106.901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의 베이스

주: 무관세 제외 품목은 기본 관세 6% 부과
 자료 : 한-칠레 FTA 협정문 무역관 재구성

- 무관세 품목 확대와 더불어, 현재 한-칠레 FTA 협정문이 양국의 변화된 경제구조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서비스, 투자, 원산지증명 등 세부규정이 최신 국제규범과 거리가 있어 FTA 개선 협상에 대한 필요성 대두

Ⅲ. 칠레의 지식재산권

1. 칠레의 지식재산권 보호 형식²¹⁾

칠레 지식재산권의 주요 유형은 특허, 상표,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새로운 식물 품종 및 저작권 등이다. 또한 미생물, 공개되지 않은 정보(약학 및 농약 분야), 원산지 및 영업 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도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1970년에 산업재산권법 제19,039호로 시작되어 2005년, 2007년 및 2012년에 개정되었으며, 저작권법 제17,336호는 1970년에 시작되어 2010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이 법들은 조만간 주요한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들 조항은 현대적 지식재산권의 필수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을 통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칠레는 파리 산업재산권 협약, 베른 저작권 협약, 특허 협력 조약(PCT), WIPO 협약, TRIPS 협약(1994) 등 지식 재산에 관한 대부분의 주요 국제 조약 및 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한국(2004), 미국(2004), 캐나다(1993), 멕시코(1999), 호주(2009), 일본(2007), 중국(2006) 및 유럽 연합(2003) 등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는 여러 경제와 무역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최근, 칠레의 특허와 상표관련 사무소인 INAPI(Instituto Nacional de Propiedad Industrial)는 특별한 조건하에서 특허 출원 소송을 가속화하기 위해 특허소송하이웨이인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에 대한 여러 시범 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 시점에서 볼 때, 특허소송하이웨이(PPH)는 칠레와 일본, 캐나다, 페루, 멕시코 및 콜롬비아 간에 합의되어 집행되었다.

칠레의 입법 및 실무에 관련된 주요 유형의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가. 특허

21) 1. TheLawReviews. August 2019. The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 Edition 8 칠레편
Marino Porzio

2.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08.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칠레)에 관한 연구.
- 28p. 지식재산권 범위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원인에게 부여하는 독점권이며, 특히 칠레 법은 특허에 대한 상당히 강력한 보호를 부여 한다. 제품 및 제품 관련 프로세스에 대해 특허가 부여된다.

특허를 출원하는 발명은 임의의 기술 분야를 언급할 수 있으며, 신규성²²⁾,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 등의 전통적인 특허 성질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특허 출원은 법적 절차의 필수 단계로서 내용물에 대한 심사를 받으며 공식 공보에 출원이 게시된 이후에도 이의신청을 주장할 수 있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보호가 부여되며,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공적권리로 전환되어 권리 갱신이 허용되지 않으나, 매우 특별한 경우에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허는 모든 기술 분야의 발명에 대해 부여될 수는 있지만 칠레 법률이 발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특허를 취득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발명의 모든 특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법이 특허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허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²³⁾

- 발견, 과학 이론 및 수학적 방법
- 미생물을 제외한 식물과 동물. 그러나 식물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시스템, 행동 양식, 그리고 경제적, 재정적, 상업적 또는 사업적 원칙이나 계획, 순수한 정신적 또는 지적 활동 또는 도박을 언급하는 것 등.

22) 제33조 - 발명은 이전의 기술 수준에서 존재하지 않았을 때 새로운 것으로 간주된다. 기술 수준은 출원일 이전에 세계 어느 곳에서든 유형 형태의 출판, 판매 또는 상업화 및 접근 가능한 모든 것(제 34조의 우선권 포함)을 포함한다.

Artículo 33.- Una invención se considera nueva, cuando no existe con anterioridad en el estado de la técnica. El estado de la técnica comprenderá todo lo que haya sido divulgado o hecho accesible al público, en cualquier lugar del mundo, mediante una publicación en forma tangible, la venta o comercialización, el uso o cualquier otro medio, antes de la fecha de presentación de la solicitud de patente en Chile o de la prioridad reclamada según el artículo 34. También quedará comprendido dentro del estado de la técnica, el contenido de las solicitudes nacionales de patentes o modelos de utilidad tal como hubiesen sido originalmente presentadas, cuya fecha de presentación sea anterior a la señalada en el inciso precedente y que hubieren sido publicadas en esa fecha o en otra posterior.

23) Ley 19.039 Artículo 37 & Artículo 38.

- 인간 또는 동물을 외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및 인간 또는 동물 신체에 대한 진단 방법. 단, 이러한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설계된 제품은 제외.
- 새로운 용도, 모양, 치수 또는 비율의 변화, 제품의 재료 변경. 그러나 이미 알려진 물건, 객체 또는 요소의 새로운 사용이 이전에 동일한 솔루션이 없었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특허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을 때는 특허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용도는 특허 출원에 포함된 실험적 증거로 증명되어야 한다.

특허법은 발명의 가능한 공개나 동일한 결과의 요소가 직접 또는 출원인에 의해 승인된 경우, 공개가 출원인에 대한 불공정 침해 시도로 발생한 경우에는 공지예외 인정을 위한 12개월의 기간이 제공된다. 칠레는 파리 협약, TRIPS의 정회원이며, 2009년 6월 2일에는 특허협력조약(PCT)²⁴⁾에도 가입하여, PCT조약에 의거한 국제출원도 가능한 상태이다.

나. 상표

상표는 어떤 기업이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유하게 표시하고 다른 회사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나 도안을 말한다. 상표는 상표등록을 하는 경우에 칠레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등록 기간은 10년이며 무기한으로 갱신할 수 있다.

모든 형태의 표현은 칠레에서 상표로 등록될 수 있으며, 그래픽 형태로 표시 되고, 그것으로 시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다. 실제로 상표등록이 가능한 표시는 살아 있거나 죽은 사람의 이름, 문자, 숫자, 이미지, 기호, 그래픽, 색상 조합, 슬로건, 소리와 같은 비유적 요소 및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단어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칠레에 등록될 수 있는 상표의 필수 요건은 주로 독창성과 식별 가능성이다.

24) wipo홈페이지(https://www.wipo.int/pct/en/pct_contracting_states.html)

물론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표시도 있다. 국가명, 국기, 국가나 국제기구의 상징,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 또는 초상화, 주어진 제품의 성별/성질/기원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표시,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칠레에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상표, 해외에서 등록된 상표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널리 사용되어 공공부문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

칠레는 상표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분류 기준으로 니스 분류를 채택했다. 상표등록을 위한 출원에는 여러 개의 류 번호를 포함할 수 있으며, 단일 등록으로 모든 류 번호를 포함할 수 있다.

칠레는 입체상표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에 대한 보호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칠레 법률은 등록상표의 의무적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등록상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등록상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조항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 실용신안

실용신안은²⁵⁾ 특허와 달리 고도의 창작성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그 기능을 개선하는 정도로도 권리 취득이 가능하며, 형상을 지닌 물품에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제공하여 원래의 기능을 개선하게 하는 장치나 도구의 물리적 개량 등을 의미한다. 실용신안은 특허와 유사한 규칙을 따르지만 특허보다는 훨씬 단순하며, 권리 행사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어 출원일로부터 10년의 보호기간만을 제공한다.

라. 도면 및 산업디자인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미적

25) Ley 19.039 Artículo 54.- Se considerarán como modelos de utilidad los instrumentos, aparatos, herramientas, dispositivos y objetos o partes de los mismos, en los que la forma sea reivindicable, tanto en su aspecto externo como en su funcionamiento, y siempre que ésta produzca una utilidad, esto es, que aporte a la función a que son destinados un beneficio, ventaja o efecto técnico que antes no tenía.

공감을 불러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에서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2차원 또는 3차원 형상을 가지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동일한 제품의 제조를 위한 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형상, 구조, 장식과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특별한 외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법은 또한 용기를 산업 디자인으로 보호하고 직물 인쇄 및 스탬핑(stamping)도 산업 도면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 두 권리에 대한 보호기간은 모두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마. 식물변종보호

식물변종은 칠레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칠레의 산업재산법은 특히 “비 특허성” 조항 중 식물에 대한 특허를 취득할 수 없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법률 조항은 식물의 육종권리법에 규정된 권리도 참고한다.

식물 육종권리법(법률 19.342)²⁶⁾은 식물변종보호라는 독특한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는 농림부의 종묘관리부서가 관리하는 전국 보호품종 등록부에 등록된 보호식물로 정의된다.

칠레는 UPOV²⁷⁾의 회원이며 1996년 1월 5일에 1978년 조항을 채택했지만 아직 UPOV 1991년 조항은 도입하지 않고 있다. UPOV의 1978년 조항을 채택한 멤버의 일원인 칠레는 우선권(12개월), 신규성(포도나무나 일반 품종의 나무는 칠레에서는 12개월 이상, 해외에서는 6년 이상 판매할 수 없으며, 다른 종에서는 4년 이상 해외에서 판매할 수 없음), 보호기간(포도나무나 일반품종 나무의 경우 최소 18년, 다른 종의 경우 15년) 및 보호범위(다양한 생식물질로 제한됨)에 관한 모든 조항을 도입했다.

26) Ley N° 19342 - La presente Ley sobre protección de los derechos de los seleccionadores de nuevas variedades de plantas, dispone estarán sujetas a su exclusiva autorización la producción, venta, comercio, reutilización con fines de producción, y el uso ornamental de los materiales de propagación de las nuevas variedades registradas.

27) 식물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 : 새로운 식물의 종과 속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으로 1961년 발효됨. UPOV에 의한 보호기간은 15년이며, 이미 알려진 식물은 본질적인 특징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을 것(이 경우의 특징은 형태학적이거나 생리학적인 것을 포함), 충분히 균질적일 것, 그 본질적 특징이 안정적일 것이 요구됨.(Union pour la Protection des Obtentions Vegetables Convention) - 출처 :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바. 저작권

저작권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로서, 칠레의 저작권은 1970년에 제정된 법률 No.17,336에 의해 규율되며,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0년에 이루어졌으며, 이 법안은 현재까지도 발효 중이다.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의 소유권, 이용권 및 무결성을 보호하는 도덕적이고도 경제적 권리를 포함한다. 이 법은 칠레 국적의 작가, 공연자 및 제작자의 권리와 칠레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권리에 적용된다. 칠레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칠레가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국제조약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문학과 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UCC(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전미 저작권 협회(the Inter-American Convention on Copyright), 공연자와 음반 제작 및 방송기구 제작자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Rome Convention on Copyright Related Rights, 1961) 등을 들 수 있다.

칠레에는 저작권이 공식적인 등록 절차 없이도 보호를 받지만, 관련된 권리를 등록할 수 있는 공식 저작권 등록소가 있다.

저작권 또는 이와 관련된 권리의 소유자는 침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 또는 형사 사법 소송을 제기하고, 침해자의 불법 활동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제적 및 도덕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침해자들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저작권 보호대상은 소설, 시 등의 문학작품이나, 그림, 회의 자료,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 다양하며 점차 영역을 넓히고 있다.

○ 저작권 보호기간²⁸⁾

현재 칠레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자의 생애와 사후 70년까지다. 원

28)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Chile)- Ley N. 17,336 Artículo 10 : La protección otorgada por esta ley dura por toda la vida del autor y se extiende hasta por 70 años más, contados desde la fecha de su fallecimiento. En el caso previsto en el inciso segundo del artículo y siendo el empleador una persona jurídica, la protección será de 70 años a contar desde la primera publicación.

래 1970년에 발간된 법률 제17,336호는 사후 30년까지의 보호 기간을 설정했으나, 이는 1992년에 50년, 2003년에는 70년으로 증가했다. 2010년 법률 제20,435호에서는 저작물의 보호, 공공영역이나 공동 문화유산 진입에 대한 결정을 방해하는 경우, 생존 배우자나 자식이 있는 경우라도 사망 후 70년 이상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 2010년 개정사항 및 논쟁요소

2007년 5월 칠레의 Michelle Bachelet 대통령은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기소할 수 있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책임제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위반이 있기 전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는 또한 도서관, 교육 기관 및 일반 대중에게 유리한 예외 및 제한 사항을 수립하고 저작권과 연결되는 법률의 요금규정을 개선했다.

이 개정안은 Sociedad Chilena del Derecho de Autor(SCD), 국제 음반 산업 연맹, 칠레 북 상공 회의소²⁹⁾, 다른 한편으로는 학계, 칠레 사서 대학, 도서관 총장 협의회, NGO Digital Rights 등의 기관들로부터 많은 반대가 있었다.

칠레 문화부는 의회에서 이 논의 과정을 주도했으며, 이 회의에서 교육적 사용, 도서관 및 도서관에 대한 수많은 예외를 제거하는 등 일련의 저작권 보유자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동의하였다. 이후, 2010년 1월 13일, Paulina Urrutia 행정예정에 관한 이 수정안은 칠레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으며 2010년 5월 4일에 법률 제20,435호로 발효되었다.³⁰⁾³¹⁾

사. 미생물

29) Chilean Association of Publishers, Distributors and Booksellers "Quiénes somos"

30) Campbell, Dennis (2010). Internet: Laws and Regulatory Regimes (second ed.). Huntington, New York: Juris Publishing. p. 231. ISBN 978-1-57823-291-8.

31) Espinoza, Helder Binimelis (2013). "La experiencia personal y el diálogo teórico como insumos para el desarrollo de un problema de investigación social". In Julio Aibar, Julio; Cortés, Fernando; Martínez, Liliana; Zaremborg, Gisela (eds.). El helicóptero de la investigación: metodología en tesis de ciencias sociales (in Spanish). Mexico, DF: Flacso México. p. 65. ISBN 978-607-9275-21-1.

칠레는 2011년 11월 18일 외교부 선언 81호를 통해, 1977년 4월 28일에 체결된 “특허 절차를 위한 미생물 기탁에 대한 국제 인정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³²⁾”의 회원국이 되었다. 부다페스트 조약의 규정에 따라, 2012년 3월 26일, 농업 연구소의 칠레 미생물 유전자원 수집 부서는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국제 기탁국(IDA) 지위를 획득했다. 부다페스트 조약은 특허 출원자가 보호를 신청하는 모든 국가에 생물학적 물질을 기탁할 필요가 없도록 보장한다. 출원자는 하나의 공인된 기관에 생물학적 물질만 기탁하면 되고, 이는 부다페스트 조약에 가입된 모든 국가에서 인정된다. 국제 기탁국은 기탁된 미생물을 수용 후, 그 생존성을 시험하고 수령증 및 생존 가능성 인증서를 발행한 후 규정 (Rule 9)에 따라 이를 잘 보관해야 한다.

Rule 9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DA에 기탁된 미생물은 필요한 모든 주의를 기울여 오염되지 않고 생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기간은 가장 최근에 기탁된 미생물 샘플 공급이 요청된 날짜로부터 5년 이상, 그리고 기탁된 날짜로부터 30년 이상을 보관해야 한다.

아. 미공개 정보

이 법안은 주로 신규 화학 물질관련 의약품이나 농화학 물질관련 법안으로서, 지난 10년간의 토론 주제는 주로 제약 및 농약 발명과 그 보호에 초점을 두었다. 이 결과로 산업재산법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과 그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이는 또한 농약관련 제품을 담당하는 농무부와 약제를 담당하는 국립보건원(보건부의 산하)과 같은 정부 당국이 제약 및 농약 제품에 대한 신규 마케팅 허가 발급과 관련하여 더욱 심층적이고 자세한 조사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마케팅 인증을 위한 신제품을 제안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민감한 기밀 정보를 포함하는 복잡하고 방대하며 값비싼 과학이나 임상

32) 부다페스트 조약(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해외 출원 시 미생물을 각국의 기탁기관에 기탁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1977년에 체결된 국제조약임. 부다페스트조약의 체결국 상호간에는 출원하는 미생물을 국제적으로 승인된 하나의 기탁기관에 기탁하고 그 수탁증을 출원하려는 각국의 출원서에 첨부하면 됨. 우리나라는 부다페스트조약에 1988년에 가입함. -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판매될 제품의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다. 또한,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제품의 특정 측면을 나타내며, 종종 그 지식은 승인이 요청된 제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 정보를 통해 승인 요청된 제품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이러한 경우(특히, 궁극적으로 위법행위)의 정상적인 대응을 위한 몇 가지 정의와 규칙을 제공한다. 아마도 이 조항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특정 제품에 대한 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정보를 의약품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농약 제품에 대해 10년 동안 공개하지 않은 의무를 당국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자. 원산지 지리적 표시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두 경우 모두 법률에 의거하여 제품의 품질, 평판 또는 기타 특성이 지리적인 특성인 국가, 지역, 영토 등과 긴밀하게 연결될 경우 그 특정제품을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

칠레의 산업재산법은 이 두 가지 차이를 특별히 설명하기보다는 매우 유사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원산지 명칭은 주로 유럽의 국가들(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시작된 오래된 산업재산권의 보호 형태로 간주되며, 주로 와인에 사용되고 다른 농산물에도 적용하지만, TRIPs³³⁾ 협상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받아들여졌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제적인 논의의 대상이었다. 이 협의를 통해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상표권 보호와의 충돌이나 혼동을 피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칠레의 법률은 이 법적 근거를 유지하여 다수의 새로운 지역 원산지 등록과 잘 알려진 외국 원산지 등록은 물론, 칠레에 현지 상표로 등록하려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다.

33) TRIPs : 특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을 말한다. 국제적인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UR 다자간협상의 한가지 의제로 채택됐다. 종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GATT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TRIPs는 이같은 단점을 보완,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했다.(매경시사용어사전)

원산지의 지리적 표시나 명칭을 위한 신청 정보로는 출원인의 이름, 주소, 지리적 표시나 원산지의 명칭, 그 지리적 영역, 그 생산 물건과 물건의 상세한 설명 그리고 그 원산지 특성 관련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³⁴⁾

차. 영업비밀

영업비밀은 소유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물건이나 방법에 대한 공개되지 않은 지식을 말하며, 칠레에서는 산업재산법 제19,039호에 처음으로 포함되었고 ‘기업 비밀’로 불렸다. 영업비밀은 비밀을 유지할 때 소유자에게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제품 또는 산업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이다. 비밀을 위반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다루는 다른 조항은 이것 외에는 거의 없다.

칠레 형법에서는 처음부터 조문 1874(형법 제284조)가 포함되어 있었다. 산업 재산법에 포함된 규정과 함께 그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법과 관련된 행동, 특히 직원이 회사를 떠난 경우가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며 최종심까지 가는 경우는 없다.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이 없이 습득된 내용을 공개 또는 이용할 경우 침해로 볼 수 있다.

카. 인터넷 도메인

34) 산업재산권법 제 97조. (Ley 19,039 Artículo 97.)

Artículo 97.- La solicitud de reconocimiento de una indicación geográfica o denominación de origen deberá indicar:

- a) Nombre, domicilio, rol único tributario, si procediera, y actividad del solicitante relacionada con la indicación o denominación pedida.
- b) La indicación geográfica o denominación de origen.
- c) El área geográfica de producción, extracción, transformación o elaboración del producto que se distinguirá con la indicación o denominación, delimitándola a los caracteres geográficos y la división político-administrativa del país.
- d) La descripción detallada del producto o los productos que distinguirá la indicación o denominación solicitada, así como sus características o cualidades esenciales del mismo.
- e) Estudio técnico, elaborado por un profesional competente, que aporte antecedentes, en el sentido que las características o cualidades que se le atribuyen al producto son imputables fundamental o exclusivamente a su origen geográfico.
- f) Un proyecto de reglamento específico de uso y control de la indicación o denominación solicitada.

비즈니스나 개인적인 취미에 관계없이 인터넷에서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할 때 중요한 것은 도메인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빠르고 쉽게 원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도메인 확보의 장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이는 방문자가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그 웹사이트에 훨씬 더 공식적인 이미지와 진정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기회가 있다면 미리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칠레는 자국민이나 외국인이나 모두 도메인 등록이 가능하므로 향후 선점된 도메인으로 인해 상표나 서비스표의 소유자가 정작 자신의 명칭으로 도메인을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권리를 사용하려면 사전 등록할 필요가 있다.

타. 반도체배치설계³⁵⁾

반도체배치설계란 집적회로 제조를 위한 레이아웃 설계(topographies)로서 집적회로를 형성하는 요소의 3차원 배열을 의미한다. 소자들의 배열과 순서는 집적회로가 수행해야 하는 전자적 기능에 따른다. Merriam-Webster는 회로를 “일반적으로 전기에너지원을 포함한 전류의 완전한 경로”로, 집적회로를 “작은 조각(예: 실리콘)위나 내부에 형성된 작은 전자부품 및 연결부의 복합체”로 정의한다. 집적회로는 공통 표면을 가진 장치로 트랜지스터, 저항, 커패시터, 다이오드 등 전기 기능이 있는 특정 요소가 그 위에 장착된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집적 회로가 전류를 조정, 증폭 또는 수정하여 전류를 제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된다. 집적회로는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특별한 순서와 배열이 필요하다. 즉, 집적회로를 구성하는 요소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집적회로의 레이아웃 설계(topographies), 다른 말로 반도체 배치설계라고 한다.

법률 제19,039의 제73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집적회로는 전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종 또는 중간 형태의 제품으로서, 그 상호 연결부위는 본체의 일부나 표면 전부분에 걸쳐 형성된다.” 이 조

35) INAPI, Chile

([https://www.inapi.cl/en/patents/types-of-patents/layout-designs-\(topographies\)-of-integrated-circuits](https://www.inapi.cl/en/patents/types-of-patents/layout-designs-(topographies)-of-integrated-circuits))

항은 같은 법 제74조에 의해 일부 보완된다. 즉, “어떤 형태로 표현되었든, 제조를 목적으로 설계된 집적회로의 3차원 배열은 집적회로의 레이아웃 디자인 또는 설계(topographies)로 간주되어야 한다.” 반도체 배치설계는 만약 그것이 독창적인 한, 이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이 설계는 배치설계 제작자나 집적회로 제작자 사이에 널리 알려진 공통적인 지식이 아닌 한, 작성자의 지적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 독창적인 결과물로 간주된다.

독창적으로 탄생한 결과물이 아닌, 공통적인 지식요소들만의 상호연결 조합으로 구성된 집적회로의 레이아웃 설계(topographies)는 법률 제19,039호의 제75조 조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호되어야 한다.

2. 칠레의 부정경쟁 관련 규정³⁶⁾

가. 부정경쟁법제정

최근까지도 칠레에는 부정경쟁을 다루는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지식재산권, 소비자권리보호, 자유 경쟁 등 몇몇 법률에서 부정경쟁에 대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었을 뿐이다. 부정경쟁 행위는 오직 이러한 유효한 법령들, 즉 독점금지법시행령(Law N° 211), 소비자보호법(Law N° 19,496), 지식재산권법(Law N° 17,336), 및 산업재산권법(Law N° 19,039)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그 결과로서 임의의 부정경쟁 행위가 불법이라고 간주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에 언급된 법령들에 반하여야만 하였다. 따라서 유효한 법령들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행위에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을 제공하기 위해 부정경쟁법(Law N° 20.169)이 마련되었다.

2007년 2월 16일 시장참여자(market agent)의 소비자를 불법적으로 혼란시키는 행위를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부정경쟁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률의 제정은 제정이전 부정경쟁에 관해 칠레의 법령들이 불충분했고 부정경쟁이 여러 사법기관들에 분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큰 개선이라고 여겨진다. 이후 2010년 2월, 2019년 1월과 7월의

36)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08. IP 가이드북 (칠레편) 141p

세 번에 걸쳐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되는 제4조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이 있었다.

나. 부정경쟁의 정의와 해석

부정경쟁법에 따르면, 부정경쟁은 일반적으로 “불법적으로 다른 시장참여자의 소비자를 편향시키는 선의나 적절한 관습에 반하는 임의의 행위” (법률 제3조)라고 규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의 제4조에서는 부정경쟁으로 간주되는 행위들의 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에 포함된 목록은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제3조에 규정된 부정경쟁법의 정의에 따른 범위 내에 들어오는 임의의 다른 행위도 부정경쟁의 침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부정경쟁법 제4조에서 부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상품, 서비스, 활동, 상표 또는 포장 사이의 혼동을 야기해, 부정한 방식으로 제3자의 인식 또는 제3자의 설비를 이용하는 모든 행위
- 본질, 출처, 성분, 특성, 가격, 제조방법, 상표,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품질 또는 수량에 대하여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실제 장점에 대하여 오류를 유도할 수 있는 부호의 사용 또는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진술이나 사실의 확산
- 상품, 서비스, 활동, 상표, 단체 또는 시장에서 그 명성을 더럽힐 수 있는 제3자와의 상업적 관계에 대한 모든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정보 또는 진술, 반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3자를 비방하는 표현은 법률의 침해로서 간주된다.
-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적, 종교적 믿음, 이데올로기, 사생활 또는 임의의 관련된 제3자의 개인적인 상황과 관련된 욕설 표현
- 진실이 아니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에 기초하여 상품, 서비스, 활동이나 단체를 비교하는 것 또는 법률의 규정을 침해하는 임의의 다른 방식

- 계약사의 의무를 위반하도록 제공자, 고객 또는 임의의 다른 계약자들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 어떤 시장 참여자의 운영을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허위소송
-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급업체에 대해 타 경쟁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상품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³⁷⁾
- 법 No. 19,983에³⁸⁾ 규정에 따른 공급업자에 대한 잔액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³⁹⁾

전술한 기업의 강요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공급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피해를 받은 다수의 공급자는 해당기업에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⁴⁰⁾

무엇이 부정경쟁 행위라고 간주되는가를 정의하는 것은 부정경쟁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사용된 다양한 기준을 고려할 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방식에 있어서, 부정경쟁법 제4조에 포함된 예들은 행위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침해자의 목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37) 부정경쟁방지법 Ley 20,169 Artículo 4º 2010. 2. 3. 추가개정

La imposición por parte de una empresa a un proveedor, de condiciones de contratación para sí, basadas en aquellas ofrecidas por ese mismo proveedor a empresas competidoras de la primera, para efectos de obtener mejores condiciones que éstas; o, la imposición a un proveedor de condiciones de contratación con empresas competidoras de la empresa en cuestión, basadas en aquellas ofrecidas a ésta. A modo de ejemplo, se incluirá bajo esta figura la presión verbal o escrita, que ejerza una empresa a un proveedor de menor tamaño cuyos ingresos dependen significativamente de las compras de aquélla, para obtener un descuento calculado a partir del precio pactado por ese mismo proveedor con algún competidor de la primera empresa.

38) 송금 및 송장집행 관리법

39) 부정경쟁방지법 Ley 20,169 Artículo 4º 2019. 1. 16. 추가개정

El establecimiento o aplicación de cláusulas contractuales o conductas abusivas en desmedro de los proveedores, el incumplimiento sistemático de deberes contractuales contraídos con ellos o de los plazos dispuestos en la ley N° 19.983 para el cumplimiento de la obligación de pago del saldo insoluto contenido en la factura.

40) 부정경쟁방지법 Ley 20,169 Artículo 4º 2019. 7. 4. 추가개정

Sin perjuicio de lo anterior, y cualquiera sea la naturaleza jurídica del deudor, la empresa de menor tamaño afectada podrá demandar el monto de los perjuicios que deriven del incumplimiento, de acuerdo a las normas generales. La acción podrá ser ejercida por el afectado, por sí, en demanda colectiva o representado por la entidad gremial que les agrupe, todo ello de acuerdo a lo dispuesto en el artículo noveno números dos al cinco de la ley que fija normas especiales para empresas de menor tamaño.

서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려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제3조에 포함된 부정경쟁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제4조에 사용된 기준과는 반대될 수 있는, 시장 참여자의 목적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이것은 부정경쟁에 대한 행위의 한계를 정의하는데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의에 선의 및 적절한 관습의 개념을 포함시킨 것은 이 일반 정의규정을 더 넓은 범위로 되게 하며 침해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하게 한다. 이러한 모순은 중요한 분쟁을 야기할 것이 확실하다.

다. 부정경쟁 행위자에 대한 소송

부정경쟁법 제4조에 나열된 행위들 중 어느 하나의 행위 또는 부정경쟁법 제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것으로 생각되는 임의의 다른 행위가 발생한 경우, 부정행위에 영향을 받은 자는 부정경쟁법에 포함된 소송들 중 하나 또는 다른 법령에 포함된 임의의 다른 소송을 병합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권한이 있다.

부정경쟁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과 같다.

- 부정경쟁 행위를 중단할 것 또는 그것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우 부정경쟁 행위를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소
- 만약 그 행위가 지속됨으로써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그 행위가 부정경쟁 행위라는 선언을 구하는 소
- 유죄 판결의 공고 동안에 그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결과 또는 침해자에 의해 생성된 수정 또는 다른 적절한 수단을 제거할 것을 청구하는 소
- 일반 칠레민법에 따라 불법행위 보상금을 구하는 소

앞서 언급된 법에 포함된 다른 소송(예컨대, 지식재산법에서 유래하는 소송)이 아니라 동일상황에서 임의의 부정경쟁 소송이 이용될 수 있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이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소송 당

사자는 비록 부정경쟁 소송들이 타법에 포함된 소송들과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방어수단으로서 계쟁고지(lis pendens) 예외 규정으로 반박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용 가능한 소송들 중에서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부정경쟁법은 소송들에 대해 약식절차(brief and summary procedure)를 포함하고, 이는 칠레 민사소송법에 포함된 일반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만약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해 내려진 법원의 판결이 부정경쟁 행위가 존재한다고 선언하면, 이 법원은 국가 경제사범 전담 검찰(National Economic Prosecutor)에 법원기록을 제출할 것이며, 검찰은 침해의 심각성이나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의 정도를 고려하여 독점금지법원(Antitrust Court)에 최고 2,000 UTM(대략 미화119,000 달러의 벌금의 부과를 구하는 소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 경제사범 전담 검찰은 기록을 수령한 이후 2년 내에 이소를 청구할 수 있다.

부정경쟁법의 제정은 비록 일부 완결되지 아니한 개념(예컨대 공정경쟁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법률제조와 제조에 포함된 부정경쟁의 정의와 같은)을 명확화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공정경쟁에 대한 침해에 대항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3. 칠레 지식재산권 동향⁴¹⁾

지난 10년 동안 칠레는 지식재산관련 정책과 행정에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TRIPS협정의 의무에 따라 새로운 자유무역 협정과 같은 체제에서 수행한 여러 결정과 정책은 모든 측면에서 국가의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극도로 현대화시켰다.

이는 법 개정, 행정의 강화 및 개선, 위조 방지에 대한 세관 당국의 통합, 위조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의 특별지부 설립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권 개발과 무역의 중요성으로부터 더 나은 지식을 창출하는데 기여했으며, 주요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41) The LawReviews 2019.8. <The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 Edition 8 칠레편 Marino Porzio

지식재산을 관리하고 개선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칠레는 2009년 3월 PCT에 가입했고, 2012년 10월 4일에 칠레 특허청은 제네바 조약 총회에서 국제특허 조사기관 및 국제 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칠레가 미생물 보호를 위해 부다페스트 조약에 가입했을 때, 칠레의 미생물 유전자원 수집담당 농무부의 운영 부서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초로 IDA의 지위를 획득했다.

위의 두 가지 사실은 국가 행정의 발전은 물론 지식재산권 존중에 대한 대중들의 전반적인 분위기 개선에도 분명히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칠레는 특허 출원심사를 가속화하기 위해 특허소송하이웨이(PPH 프로토콜)에 동의했다.

4. 칠레 지식재산권 개정 방향

가. 최근 지식재산권의 전개⁴²⁾

지식재산권 침해는 전 세계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사이다. 유럽 EUIPO의⁴³⁾ 지식 재산권 SME 스코어보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복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3가지 이유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등록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지식재산권을 완전히 활용하기 위한 법적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위의 내용에 따라,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오랫동안 각국의 특허청과 정부를 지원해 왔으며, 각 국의 위조 및 불법 복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WIPO의 기술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칠레 정부는 의회에 상표 및 특허 절차를 개선하고

42) Latin america IPR SME Help desk -Modernizing Industrial Property Law in Chile - At last Bernardo Alarcon, IP Specialist Lawyer - Catholic University of Louvain (Belgium)

43) 유럽연합지식재산청. - 종전의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HIM)이 2016년 3월 23일부터 그 명칭을 EUIPO로 변경. EUIPO는 EU 전역에서 유효한 EU상표와 등록공동체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s)의 등록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EUIPO는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심판원(Boards of Appeal)과, 2012년 6월에 설립된 유럽 지식재산권침해 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조직으로 두고 있음. 본부는 스페인의 알리칸테에 위치.

국제법에 상응하도록 법률을 조정하며 산업 재산 시스템 내에서 법적 확실성을 높이는 법안을 상정했다. 2019년 4월 9일, 이 법안은 하원 의원(Cámara de Diputados)을 통과한 후, 상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조는 오늘날 기업들이 직면 한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위조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상용 브랜드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 칠레는 최근 개정된 규칙에 따라 형법 또는 지식재산권 법 2017에 포함된 것과 같이 위조에 대처하기 위한 수많은 규정을 이미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 중 어느 것도 위조 그 자체를 범죄로 인식하여 특별히 제재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법안은 산업 재산법을 수정하여 위조품을 제조, 수입 또는 상품화하는 자에 대한 징역형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피해자가 칠레에 상표를 등록해야하며 관할 법원은 침해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산업 재산법에서 손해 배상에 대한 고정된 민사 보상은 고려되지 않고, 민법의 일반 규칙에 따라 계산되었다. 하지만, 새 법안이 상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 최대 보상금액(즉, 2.000 UTM⁴⁴)을 명시하여 보상의 확실성을 향상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이 수정안은 칠레 산업재산 연구소(INAPI)에 대한 절차를 기존의 서면 등록 절차 대신 디지털 방식의 절차로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표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칠레 법률은 그래픽 표시가 가능한 기호, 즉 문자 상표, 도형 상표(즉, 디자인 또는 로고), 혼합 상표(즉, 워드 및 디자인) 및 소리 상표(즉, 음악의 녹음)만 상표로 등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에서는 상표 기능도 수행하고 보호할 가치도 있는 “비전통적 상표” 또는 “새로운 유형의 상표”가 제외되었으나, 새로운 규정은 동작 상표, 홀로그램 및 입체상표를 포함시킨

44) Unidad tributaria mensual(UTM): 월별세금단위. 칠레에서 세금 목적이나 벌금에 사용되는 계정이며, 인플레이션에 따라 업데이트 됨. 1974년 12월 31일 법령 제830조 8항을 통해 작성됨.

La unidad tributaria mensual (UTM) es una unidad de cuenta usada en Chile para efectos tributarios y de multas, actualizada según la inflación. Fue creada el 31 de diciembre de 1974 mediante el artículo 8.º del decreto ley 830.

다. 또한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적용하며, 국제관례에 따라 도면 및 산업 디자인은 15년으로 보호기간을 확장된다.

상표의 주된 목적인 상표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상표가 등록된 후 5년이 지나도 칠레 국내에서 권리자 또는 제3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상표가 그 특이성의 정도를 상실한 경우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즉, 상표는 회사마다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별하게 하는 고유의 표시라는 일반원칙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법률은 수수료가 지불될 때까지 특허 출원에 출원 날짜를 명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날짜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필수적이며, 따라서 “기존 기술의 상태“를 평가하는 절차에 영향을 미치고, 본 발명이 참신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이 날짜는 20년의 보호가 적용되는 시점을 결정한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러한 법적 개선으로 인해 칠레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협약에 기반을 둔 국제표준을 준수하게 된다. 이 모든 전개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집행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미국 무역대표부가 최근 발표한 슈퍼301⁴⁵⁾ 보고서에 칠레가 여전히 불성실한 지식재산권 거래 파트너로 간주되어 우선감시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당분간 상원에 의한 비준의 전개와 입법의 추가이행을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칠레는 특허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칠레법이 발명으로 간주하지 않거나 대상 물건이 특허성이 있다고 간주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술 분야의 발명을 보호한다. 산업재산법의 마지막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 중 하나는 산업재산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실제로, 193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산업 재산에 관한 마지막 두 가지 법률은 원래 산업재산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가 거의 없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만을 열었을 뿐이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법적

45) 2019 special 301 report(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9_Special_301_Report.pdf)

조항의 초안과 이러한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관심과 정교함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다. 1991년에 법률 제19,039호에 도입된 수정사항으로 인해 이에 대한 문제점이 더욱 심해졌다. 이 소송은 청구자에게 위반 자체를 입증할 의무와 피고에 의해 자행된 사기에 대한 입증 의무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효과적인 소송 가능성 자체를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가 덜 중요시 되었던 1930년대에 상기 제1법이 공포되자, 최근 몇 년간에 걸친 산업과 상업 활동의 발전은 산업재산권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보다 나은 법률 조항을 필요로 했다. 새로운 법률규정은 이 분야의 명백한 개선을 나타내며, 그 실질적인 적용은 증가하는 침해와 관련하여 산업재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새로운 법률에 의해 확립될 법적 체계는 아래와 같다.

① 민사소송

산업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 권리의 보유자는 다음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 권리침해 행위의 중단
- 손해 복구
- 침해가 지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필요조치 채택

입법자는 위반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이 확립되는데, 과거에는 피고가 첫 번째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기소되지 않는 한 불가능했다.

이러한 조치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 제107조에서 입법자는 이러한 조치가 일반 절차보다는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에 제출되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요약 절차’의 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하여 적절한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측면은 일반적으로 침해가 경제나 상업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특히 중

요하다. 결정이 늦어지면, 비록 유리한 판결이 뒤늦게 내려지더라도 완전히 쓸모없는 시간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 제108조는 청구인이 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가능한 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침해의 결과로 청구자가 받지 못한 이익
- 침해의 결과로 침해 당사자가 얻은 이익
- 침해된 권리의 상업적 가치와 이미 부여되었을 수 있는 계약라이선스를 고려하여, 권리 보유자가 라이선스를 부여했을 때 지불해야했던 정당한 가격

또한 새로운 법은 이러한 절차에서 모든 종류의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다. 여기에는 입법자가 법정지원을 위해 이 문제에 첨부하는 중요성 관련 명확한 신호가 포함된다. 이 법은 특히 5가지 예방 조치가 있다.

- 위반행위의 즉각적 중단 명령
- 위반의 대상제품과 이를 저지르는데 사용되는 자료 및 수단인 압류. 상표의 경우, 이 조치는 위반대상인 상표를 포함한 포장, 라벨 및 광고 자료의 압류를 포함
- 1인 이상의 회계감사관 임명
- 어떤 방식이든 침해의 원인이 되는 제품을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것 금지
- 침해 주장의 원인이 되는 제품의 판매 또는 마케팅에서 비롯된 자산, 자금 또는 유가 증권을 법원에 의해 지정된 대출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한 보유

예방 조치는 해당 침해가 진행되는 구조나 위해한 조치가 있을 경우에 요구될 수 있으며, 법의 명확한 결정이나 이와 동일한 조치로서 민사 소송법에 명시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산업재산법에 완전히 새로

운 이 조항들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보장하고 그 법을 적용함으로써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② 형사 소송

앞서 다룬 법률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법률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형사 소송에 대한 규칙을 적용한다. 법 제19,039에서와 같이, 이러한 규정은 대부분 침해가 존재하고, 그 침해자 측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적용되는데, 그에 앞서 침해된 권리의 소유자가 직접 그 침해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침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산업재산권을, 그 중에서도 특히 특허나 상표를 침해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위의 상황에 더해, 법원이 규정된 범위에서 가장 높은 범주의 벌금을 매기더라도 약 1,700달러에서 57,000달러의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벌금은 사실상 비즈니스와 산업계에서 상징적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률에는 기존 조항을 개선하는 일부 추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엄격함이란 측면에서 볼 때 예외적이거나 중대한 결과가 없는 경우엔 부분적으로 설득력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허 위반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있으며, 이로 인해 불법적으로 생산된 물건은 파괴되고, 상표권이 침해되어 위조된 상표를 가진 물건도 마찬가지로 파괴된다. 그러나 이미 지적했듯이 산업재산권이 침해된 상황에 대해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앞서 언급한 형사 소송의 적용을 형사상의 소송만으로 한정할 우려가 있다.

③ 경향과 전망

칠레의 지식재산법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2013년 4월 26일, 정부는 이 법에 대한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완전히 새로운 지식재산법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의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새로운 초안에 대한 초

기 논의는 주로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이루어졌지만, 언제 완료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최근 몇 년 동안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으며 여전히 의회에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18년에 최소한의 개정이 필요한 일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개정 초안을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새로운 초안은 2018년 9월 20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의회는 이 새로운 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실질적인 조항과 많은 행정적 조항이 조합된 다소 광범위한 문구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맥락에서 개정이 필요한 몇몇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 칠레 상표법에 원래부터 있었던 산업시설 및 상업시설 관련 상표 클래스 삭제
- (최근에)입체상표 보호조항
-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에 대한 개선
- 등록 상표의 의무적 사용, 5년 이내에 미사용 상표의 등록 취소
- 특허 분야의 우선권 복구 조항
- 잠정 특허의 설립;
- 특허의 추가 보호에 대한 제한은 최대 5년으로 제한
- 영업비밀 보호 개선

각 사안에 대한 의회의 입장은 의회에서 전체 지식재산권 시스템에 대한 주요 논의가 이루어질 때 나타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나. 진행 중인 칠레 지식재산권의 구체적 개정안⁴⁶⁾

- 자국 산업재산권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최근 칠레 정부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 § 19,039, 산업재산 연구소를 설립을 위한 법률

46) Carey <Alertas Legales 2018. 10. 11.판 참조>
(<https://www.carey.cl/presentan-nuevo-proyecto-que-modifica-la-legislacion-sobre-propiedad-industrial-en-chile/>)

§ 20,524 그리고 형사 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 본 프로젝트에 의해 도입되는 주요 수정안은 산업재산권의 보다 강력한 보호와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신속한 등록 절차의 수립과 함께 절차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항목별 주요 수정 사항

<상표>

-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상표개념 확장
 - ※ 법률 § 19.039의 조문 제19항의 상표 개념을 수정함으로써, “비 전통적 브랜드“ 또는 “새로운 유형의 브랜드“(예: 동작 상표, 홀로그램, 위치상표, 냄새상표, 촉각상표)를 상표의 개념에 포함 시키려고 함. 지금까지 상표의 개념은 그래픽으로 표시 될 수 있는 표시, 즉 워드 마크, 워드 및 라벨 및 소리 상표만 인정되었음.
- 등록 상표의 사용이 없을 경우 상표 등록 취소
 - ※ 이 프로젝트는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표의 사용이 부족하면 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마찬가지로, 본 프로젝트는 상표 고유의 특성을 잃었을 때, 즉 상표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변형 된 경우 상표 등록 취소를 요청할 가능성을 감안함.
- 특수 상표 범주로 상업시설과 산업시설 제거
 - ※ 국제적 추세에 따라 이 법안은 상업시설(상품이 상품화되는 물리적 위치를 식별하는 상표를 보호)과 산업시설(제품의 제조 시설을 식별하는 상표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의 상표 카테고리를 제거. 이러한 카테고리에 이미 등록된 상표는 취득한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서비스표로 갱신 될 수 있음.
- 상표 위조 범죄 도입
 - ※ 상표권 위조에 대한 위반 시 벌금과 함께 541일에서 3년1일의

징역형을 선고.

- 상표권 침해시 사전 보상

※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이 개정안은 침해상표 소유자에게 침해당 최대 2,000단위의 월별 세금단위(약 미화 140,000 달러)의 단일 보상 합계로 대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 도입

<발명 특허>

- 임시특허 부여

※ 본 수정안에는 출원인이 최종 특허 출원을 제출하기 위한 모든 요구 사항을 아직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임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 부여. 임시 특허는 신청자에게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최종 특허를 출원 할 수 있는 우선권 부여.

- 특허에 의해 부여 된 권리에 대한 예외

※ 이 수정안은 특허권 소유자에게 부여 된 권리에 대한 일련의 제한 사항 소개. 이는 법률 § 19.039의 49조항에 추가되며, 특허에 의해 부여 된 권리는 사적으로 또는 상업적인 이유 없는 행위에 까지 확장되지 않음.(예: 독점적인 실험 행위 및 개별 사례에 대한 의학적 처방에 따른 의약품 준비 등)

- 특허출원에서 추가 항목에 대한 초과 수수료 징수

※ 이 수정안은 50매를 초과하는 모든 특허 출원은 추가되는 20페이지 또는 페이지의 일부에 대해 월별 세금 단위(약 US \$ 70 상당)에 해당하는 추가 수수료 지불 제안.

- 특허권 침해행위

※ 이 수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특허에 대해 정당한 소유자가 등록양도 요청(및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 현재까지는 법률 § 19,039에서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무

효 처리된 이후에만 가능.

- 추가 보호 제한

※ 추가 보호를 요청하는 기간은 등록 허가 후 6개월에서 60일로 단축하고, 합당한 이유가 없는 지연이라면 이와 상관없이 보호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

<산업디자인 및 도면>

- 약식절차 및 보호기간 연장

※ 이 수정안은 새로운 “약식절차” 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출원 검사 없이 산업디자인 또는 도면에 대한 “인증서” 를 받을 수 있다. 이 검사는 인증서 소유자나 제3자가 추후에 요청 가능함. 마찬가지로, 산업디자인과 도면의 보호기간을 현재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법안 § 20,254 개정>

- INAPI의 법적 권한과 관련하여, 이 수정안은 일반 사법재판소에 제기된 소송의 결정적인 결의에 대한 항소에서 당사자로 출연할 가능성을 부여한다.

<형사절차 법규수정>

- 이 수정안은 법률 § 19,039에 의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공개 형사소송을 수립하며, 범죄행위로 간주되므로 권리소유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의해 제기 가능.

※ 칠레의 법 개정 절차는 위원회(Comisión)에서 발의하여 하원(Camara de diputado)과 상원((Senador)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Presidente)이 공포하는 단계를 거치며, 개정을 위해서는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IV. 중남미 지역에서의 지식재산권

1. MERCOSUR⁴⁷⁾ & 칠레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⁴⁸⁾

가. 효과적인 지식재산 전략의 정의

Mercosur 가입국가들과 칠레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를 국제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면 지식재산권(IPR)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자료는 이 지역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용어로 작성했다.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이 집약된 부문에서 경쟁 활동을 했든, 아니면 지식재산권 등록 이력이 거의 없는 중요하지 않다. 만약 적시에 이 지역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부당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특허의 등록권한 상실 즉, 제3자가 중소기업의 상표를 등록한다거나 소유자가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지식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단계를 아는 것은 거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무형 자산의 소유권을 얻는데 사용되는 법적 도구는 다른 유형의 자산을 얻는데 사용되는 도구와 다르다. Mercosur 가입국가들 간의 협약으로 어느 정도는 유사성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마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고유한 특성이 있으므로, 국가별 접근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Mercosur나 칠레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비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곳의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 관리 및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실수의 하나는 지식재산권 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들 수 있다. 이 지

47) 메르코수르(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 1991년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 4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이다. 2012년 베네수엘라가 추가로 가입했으나 대외 무역협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2018년 기준 볼리비아가 가입 절차를 밟고 있고 칠레·콜롬비아·에콰도르·페루·가이아나·수리남은 준회원국이다. 메르코수르 면적은 1천280만km², 인구는 2억8천900만 명,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2조8천300억 달러다. 브라질이 면적의 66%, 인구의 70%, GDP의 62%를 차지한다. - 매경시사용어사전

48) Mercosur IPR SMEs Helpdesk

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략은 회사의 관리자뿐만 아니라 직원에게까지도 확장되어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직원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직원들의 교육이 부족하면 기밀정보 유출, 보호가 가능한 혁신적인 기술임에도 뒤늦게 인식할 수도 있고, 정당한 권리임에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첫 번째,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형성한다.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는 회사의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모든 정보를 포함하므로, 회사의 지식재산을 관리하고 잠재적인 파트너나 자금을 확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지식재산의 식별: 회사 내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름, 작품, 외관, 발명 등이 지식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지식재산여부의 식별”을 위해서는 Mercosur의 IPR SME Help Desk의 정보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유용하다.
- 지식재산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존재여부 확인: 지식재산이 확인되면 이 중 어떤 것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이 권리를 신청하여 보호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및 현재의 위치 확인: 기업의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취한 이후라면, 국가별로 어떤 상태인지(허가, 적용, 일시중지, 만료 등) 개별적인 분류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
- 소유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확인: 선점 특허에 대한 의존성, 공존 계약 또는 독점 라이선스 계약과 같은 소유권에 대한 제한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지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그를 위한 직원들의 훈련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비자발적이든 자발적이든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것은 발명보호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3자가 그 아이디어로부터 이익을 얻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발명이 진행 중이라면 직원들에게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설명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떤 사람에게 연락해야하는지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접촉해야할 사람은 지식재산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이다.

세 번째, 기밀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특허나 실용신안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노하우나 기술정보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는 동안에만 가치가 있다. 어떤 국가에 상관없이, 기업은 이 영업비밀을 모든 법적,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호해야만 한다.

네 번째,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한다. 기업은 제3자가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잠재적인 침해의 우려가 감지될 때를 대비한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한다. 이때 침해를 인지한 관련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누가 침해를 처리하는 담당자인지와 침해를 예방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내부 조치가 무엇인가이다.

나. 중남미 지역의 지식재산 보호 방법

○ 대상 국가의 지식재산 시스템의 정보를 얻는다.

해당 지역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할 때 주로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는 각 지역 법률시스템들 간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차이는 경우에 따라 국가별로 특정 지식재산권의 범위나 기간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직 이 지역에서는 유럽처럼 상표나 디자인을 하나의 지식재산권 기구에 출원하여 모든 유럽국가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각 대상국가에 개별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등록해야 한다. 더욱이 몇몇 상황에서만 WIPO 국제 등록시스템⁴⁹⁾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신청

49) 메르코수르 국가나 칠레는 마드리드(국제상표 등록시스템)나 헤이그시스템(디자인)의 멤버가 아니다. 따라서 EU의 중소기업이 메르코수르 국가나 칠레에 상표등록을 요구할 경우, 국제상표 등록을 위해 WIPO가 설정한 간소화 된 절차의 혜택을 누릴 수 없으므로 비용이 많이 들고 등록 절차가 복잡해짐. 특허에 관해서는 브라질과 칠레만이 특허협력조약(PCT)의 회원임.

서를 제출하기 전에 등록 가능여부를 사전 검색할 필요가 있다. 해당 국가의 법체계에 익숙해지면, 지식재산권 등록을 위한 출원을 하기 전에 등록가능여부를 검색하는 것이 좋다. 상표의 경우, 사전에 등록된 상표들을 검색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동일한 클래스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사전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중간지체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이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고 최악의 경우 등록이 거절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행해야만 한다.

사전에 등록된 상표의 소유권자만이 상표 출원을 반대할 수 있는 유럽과 달리, 모든 Mercosur 국가에서는 사전에 상충되는 상표의 존재만으로도 출원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칠레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등록된 상표의 사용이 의무가 아니므로 서로 상충되는 상표의 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사전 등록여부 검색은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지만 불행히도 일부 MERCOSUR 국가에서는 이러한 검색을 쉽게 수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와 베네수엘라에는 공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반면, 아르헨티나(INPI), 브라질(INPI), 칠레(INAPI)⁵⁰⁾ 및 우루과이(DNPI)는 상표 데이터베이스에 무료로 액세스 할 수 있어 사전 검색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 사전 검색의 결과로 등록하려는 상표의 등록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상표를 수정해야 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출원하려는 상표가 출원대상국내에서는 일반명칭으로 쓰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단어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허(및 디자인)의 경우 사전 등록가능여부 검색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출원되는 특허의 신규성과 창의성 단계를 평가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특허를 상업화하는 것이 기존의 특허를 침해하는지와 이전 특허 소유자의 승인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Freedom to operate“라고도 하는 특허 정리검색은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관련 분야의 특허 변리사가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자체 예비검색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팁은 Mercosur IPR SME Help Desk의 “특허 검색 방법 : 기본 사항” 과 같은 사이트를 참고할 수도 있다.

50) <https://ion.inapi.cl/Marca/BuscarMarca.aspx>

○ 각 대상 국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해야 한다.

저작권(자동으로 보호가 부여되는 권리)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등록을 해야 권리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다. 기업이 이 지역의 어느 국가를, 어느 정도의 기간(단기, 중기, 장기)을 정하여 목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등록 대상과 장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절차이다. 적시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경쟁업체가 해당 상표를 악의적으로 등록하여 본인의 상표등록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특허가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등록이 불가능해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뒤늦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적시에 진행하는 경우에 비해 돈, 시간 또는 평판의 측면에서 매우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상표나 디자인을 단일 기구인 OHIM⁵¹⁾에 출원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럽연합과 달리, MERCOSUR / Chile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에 각각 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 전문가가 중소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상품화하려는 국가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나 위조 상품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인접국가에도 등록할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이 조치로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향후 해당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침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의 경우, 일단 출원이 접수되면, 출원서에 언급된 발명은 신규성을 확보한 상태에 있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이 모든 대상 국가에 동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첫 번째 국가에서만 특허권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이도 파리 협약은 “우선권” (제4조) 조항을 제공한다. 일단 출원이 접수되면, 출원인은 다른 국가에도 동일한 발명에 대해 출원을 12개월 동안 첫 번째 출원국에 출원한 날짜를 우선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는 특정 조건에 따라 12개월의

51) 유럽공동체 상표 디자인청(OHIM,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유예 기간”을 제공한다. 즉, 출원일 1년 이내에 국내외에 공개된 발명품은 여전히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상표의 경우, 이전 출원이 존재하더라도 다른 국가의 새로운 출원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제3자, 해당 국가의 에이전트 또는 유통업체가 해당 국가를 방문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해 출원할 위험은 항상 남아있게 마련이다. 물론 파리 협약은 출원인에게 6개월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스페인에 상표를 출원하고 3개월 후 제3자가 아르헨티나에서 동일한 상표를 신청한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아르헨티나에 상표를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여 제3자의 출원을 거절시킬 수 있다. 예외적으로 상표 분야에서 파리 협약의 Art. 6 bis는 소위 “저명 상표”를 보호한다. 원산지 국가에서 저명한 상표는 출원대상 국가에 아직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보호된다. 상표법의 관행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및 베네수엘라는 단일 클래스 시스템이므로 중소기업은 보호할 각 제품 및 서비스의 클래스마다 상표 출원을 해야 한다. 한편 칠레는 멀티 클래스 등록을 허용하지만 카테고리에 따라 제한이 있다. 즉, 하나의 출원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보호할 수는 없다. 실제로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표장을 등록해야한다는 의미이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소리상표’나 ‘입체상표’와 같은 모든 “비전통적 상표”가 Mercosur 국가나 칠레에 모두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은 기간, 등록 절차 또는 범위와 같은 측면에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칠레와 베네수엘라는 의류를 디자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저작권과 관련하여, Berne Convention에 따라, 문학, 예술 작품(서적, 음악, 시청각 작품, 소프트웨어 및 전자 데이터베이스 등을 포함하는 용어)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Mercosur의 모든 국가와 칠레는 Berne Convention의 회원국이므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권리를 집행하고 증거의 수단으로서 대상 국가에 예술 작품을 등록하는 것이 권장된다.

Mercosur 국가들과 칠레에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 이를 등록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볼 때 유럽보다 오래 걸린다. 그 중

가장 큰 원인들을 꼽자면,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으로의 전환, 직원의 부족(특히 직원들의 자질 부족), 지속적인 직원의 교체 및 매우 상투적인 방식의 접근 등을 들 수 있다. 특허가 등록될 때까지의 국가별 소요기간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금속·기계분야에서 3년, 생명공학분야에서 5년, 제약분야에서 7년이 소요될 수 있다. 우루과이에서 특허등록을 받기위한 평균기간은 10년~11년이다. 브라질에서는 분야에 따라 7년에서 14년까지 걸린 이력이 있다. 칠레에서는 그 기간이 3년에서 6년으로 다양하다. 베네수엘라는 특허가 등록된 이력을 찾기 힘들다. 각 나라별로 이와 같은 이력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브라질 같은 나라는 등록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일부 “빠른 차선(Fast-lanes)” 절차를⁵²⁾ 제공한다.

상표의 경우에는 출원 후 등록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브라질은 2~3년, 칠레는 4개월에서 2년까지 걸리고, 베네수엘라는 8~12개월 정도가 걸린다. 물론 제3자의 이의신청이나 심사관의 의한 등록절차 지연에 의해서도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은 인지해야 한다. 또한 일부 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에서는 출원인이 해당 국가의 정식으로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선임해야한다. 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리인 선임이 강력히 권장된다.

다.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

일단 지식재산권이 등록되거나, 등록절차의 기간을 고려할 때 조만간 등록될 것이 예상되면, 기업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상업화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국제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이러한 대안을 선택하거나 결합하는 것은 요구되는 투자 수준이나 제품에 대한 통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략이나 지식재산권의 유형에도 달려 있다. 예를 들자면, 온라인 비디오를 방송하

52) Mercosur IPR SME Helpdesk Factsheet에 “브라질에서 특허를 가속화하는 방법”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려면 전자 상거래에 관한 권리만 있으면 충분하고, 프랜차이즈를 위해서는 특허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권보다는 상표권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권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Mercosur 국가들과 칠레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때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사항을 고려해보자. 중남미의 Mercosur 국가들과 칠레가 유럽과 불가피한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도, 파트너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 고객에게 다가가는 방법 및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 등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으로 사업기반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준수해야 할 현지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세금
- 계약
- 경쟁
- 소비자 보호
- 온라인 광고
- 데이터 프라이버시
- 전자 상거래
- 회사 설립

이들 각 분야별 영향의 정도는 선택한 사업모델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 침해 시의 지식재산권 집행

유럽의 지식재산권 시행 기구의 조사와 미국 Special 301 Report⁵³⁾ 또는 BSA⁵⁴⁾ Report와 같은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MERCOSUR 국가들

53)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서 2019년 4월에 발간한 보고서로 통상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집행 및 보호 현황과 이행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정하지 않은 국가명단을 제시하는 보고서 (우선감시리스트에 속하는 국가 중 중남미에 속하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가 있다.)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9_Special_301_Report.pdf

54) 미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단체. 1988년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로터스 등 민간 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했다. 자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

과 칠레에서 이루어지는 위조나 불법복제 활동의 양은 여전히 매우 높게 나타난다. 정부 정책의 수준으로 볼 때, 정부가 위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불법 복제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경범죄로 인식되며 그러한 인식에 따라 처벌도 진행될 뿐이다.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판사들에게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부족하다. 더 나쁜 것은 특허 행사 법원에서 전혀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의 처벌은 일반적으로 억지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마. 소결

Mercosur 국가들과 칠레는 3억 명 이상의 잠재 소비자를 가진 매우 발전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이들 국가들로 진출하는 것은 유럽연합과 같은 단일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을 가진 국가 그룹에 진입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별로 별개의 법체계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에 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Mercosur 연합 국가라 하더라도 국가별로 다른 지식재산법을 가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수준이 유럽 혹은 다른 대륙보다 낮은 경우라도 개별 국가별로, 심지어 지식재산권별로도 판단해야 한다.(일반적으로 상표는 특허보다 보호하기가 더 쉽다⁵⁵⁾)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Mercosur 국가들이나 칠레에 있는 지식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한, 사후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일관되고 강력한 지식재산 전략을 개발하면 해당국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문제에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법 복사로 인해 생기는 피해의 종류와 그 손해액을 산출하여 통계를 내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에 각국별로 통상 압력을 하도록 건의하거나 직접 시정을 요구하기도 한다.(출처: TTA 정보통신 용어사전)

55) 2019년 칠레에서 특허 출원건수는 3,237건에 불과하지만 상표출원건수는 46,949건에 달하여 상표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빈도가 훨씬 더 큼을 알 수 있다.- 칠레 특허청(INAPI) 통계 참고.

2. 중남미 지역에서의 상표권 등록, 관리⁵⁶⁾

중남미 지역의 상표권 시행은 일련의 법률 및 국제 협약을 따른다.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개발한 GII(Global Innovation Index 2019)는 경제의 혁신 성과를 측정하는데, 이 GII 지표에서 칠레, 코스타리카, 멕시코 및 브라질은 각각 51위, 55위, 56위 및 66위를 기록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지역의 리더로 인식되고 있다. 태평양연합 회원국인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및 페루는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s) 협력 덕분에, 태평양연합 회원국내에서 신속하게 특허가 처리될 수 있다. 비록 이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처리되지는 않고 있지만 상표는 혁신적인 상품과 관련된 산업 개발에 매우 중요하다. 중남미 지역에서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것의 중요성과 산업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중남미지역의 지식재산권 및 상표권의 중요성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상표를 등록하면 상표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나타내며, 타인이 자기의 상표나 상품을 상용화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를 등록하거나 상품의 특허를 등록하면 비즈니스가 경쟁 업체와 차별화되므로 자신의 제품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매우 중요하다. 중남미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더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고 상표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창작물 보호를 통한 이점은 다음과 같다.

- 독점적 권리, 일반적으로 기업은 최대 20년 동안 독점적으로 발명을 이용할 수 있음
- 경쟁 업체의 불법복제 방지
- 본 발명의 상용화로 인한 투자 수익 증대
- 발명품의 라이선스 또는 판매 기회

56) BIZLATINHUB, Oct 22, 2019 <How to Register, Manage and Enforce Trademarks in Latin America> by Team Latin America,

<https://www.bizlatinhub.com/trademark-enforcement-latin-america/>

- 협상력 향상
- 명성 / 브랜드 개발 등

거의 모든 중소기업(SME⁵⁷⁾)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상표명(Commercial name)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 목록, 상업 전략, 독창적인 그래픽 디자인 및 창작물 등을 귀중한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 또한 일부 중소기업은 발명이나 서비스 개선에 기여했을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경우에 있어, 기업은 경쟁업체보다 앞서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권(IP)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이해해야 한다.

나. 중남미지역에서의 국가별 상표권 집행

특허권이나 상표권이 등록된 기간 동안, 그 발명이나 상표는 보호되며, 그 권리확인을 위해 현지 당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지식재산권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권리침해 및 위반에 대해 행정 조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3자가 위반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여 분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허에 대한 권리와 법적조치 가능성을 명시한 경고 서한만으로도 제3자가 상표 및 특허 사용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상품의 상세하고도 정확한 베이스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품 구분을 위한 시방서에는 형상, 노미네티브 벨류(nominative values), 그래픽에 대한 언네임드 태그(unnamed tags) 등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칠레는 지식재산(IP) 보호에 있어서 이 지역을 선도하고 있다. 특허, 실용신안 및 애플리케이션 제작 등의 교육과 관련된 제도적 변수가 발전되어 있고, WIPO의 회원국들 간의 상표권 집행도 용이하게 했다. 칠레는 지식재산 처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1일에 DAS(Digital Access Service)를⁵⁸⁾ 도입했다.

57) Small or medium sized enterprise

58) This electronic system facilitates the secure exchange of patent documents that have priority, models of utility, drawings and industrial designs between offices of the participating patents.

회원국 특허청들 간에 우선권, 실용신안, 도면 및 산업디자인 관련 문서의 교환이 용이하도록 하는

칠레는 파리 협약의 회원국이자 지식재산의 무역관련 협정의(TRIPs) 회원국이지만, 지식재산권 관련 다른 무역협정도 또한 인정하고 있다. TRIPs는 국경문제도 다루고 있는데 이는 국경 지역에서 발견된 침해는 법정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칠레에는 지식재산권 문제를 두 가지 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허와 상표 및 디자인에 적용되는 산업재산법으로 알려진 법 No. 19,039와 저작권을 관장하는 저작권법인 법률 No. 17,336이다.

위반 시 집행 가능한 조치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있는데, 저작권법은 형사 및 민사소송 모두가 적용가능하나 산업재산법은 형사소송만 적용한다. 민사소송은 부정경쟁법 N 20,169 및 저작권법에 따라 가능하다. 민사 소송의 경우 법원은 기소를 담당하고 손해 배상을 결정하는데, 상표권자의 제안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처벌은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소유자의 손해액, 침해자의 이익 또는 라이선스의 재산적 가치에 달려있다. 형사소송을 하려면 등록 상표가 “Marca Registrada“(등록 상표), MR 또는 ‘®’ 형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형사소송은 제3자의 상표가 원본과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등록 상표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법원은 침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도구, 제품, 재료를 파기하거나 양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멕시코 특허청(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은 산업재산 시스템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WIPO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회원국 간의 상표권 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세계 무역을 중요시하는 멕시코의 특성상, 주요 특허관련 변수도 무역과 관련이 있다.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일원으로서 무역에 있어서 북미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최근 USMCA 토론에서도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지식재산보호관련 주제를 다뤘으며, 이때 캐나다와 멕시코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USMCA조항의 20장은 생물학 제제에 대한 데이터

시스템.

보호를 10년 연장하는데, 이는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는 동안 데이터의 독점성에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제약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 장은 상표권 집행과 관련된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멕시코에서 분쟁을 해결할 때 참조될 수 있다.

침해에 대한 청구는 IMPI(멕시코 특허청)에 제기한다. 청구가 접수된 후 IMPI는 피고에게 통지해야 하며, 피고는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IMPI는 법원이 아니므로 침해자에게 벌금을 내고 해당상표를 재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정도만 할 수 있다. 반면에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IMPI가 최종 선언을 한 경우에만 제기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적어도 침해된 상품가치의 40% 정도이어야 한다.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특허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소하기 전이나 혹은 기소하는 중에도 산업재산법에 따라 침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injunction)” 이라고 한다. 입증되지 않은 상품이 원본과 동일할 경우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 법무부에서 해당 품목이 위조품임을 확인하면 해당 건은 연방지방법원으로 이관된다. 형사 처분은 2년에서 10년까지의 징역과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형이 부여된다. 상품에 대한 특허 또는 상표에 관심이 있다면 현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멕시코 법률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9년 7월 WIPO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브라질은 기술과 기업가 정신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허 분야에서는 특히 연구 개발 투자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 브라질 특허청 INPI(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의 공식 웹 사이트에는 지식재산관련 6가지 일반 법률 및 조약이 있다.

6가지 법률 및 조약은 다음과 같다.

- 법률 N 9,279 : 산업재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규정
- 저작권법 N 9,610 / 98 : 저작권법의 수정, 갱신 및 통합과 기타 조항 설정
- 법률 N 5,648 : 브라질 특허청 및 그 부대정책 설정
- 법령 N 8,854 : 브라질 특허청의 신탁 및 규제 승인

- 조례 No. 11 : 브라질 특허청의 내부 규정 승인
- 파리 연합 협약

중남미 지역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WIPO 체제에 브라질을 통합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브라질은 2019년 7월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WIPO의 국제상표시스템에 가입했고, 2019년 10월 2일에 발효되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상표 권리자들은 브라질에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편의성과 비용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브라질에서 상표권자 또는 라이선스 사용자는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라이선스 사용자는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라이선스 사용자가 브라질 특허청(INPI)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브라질의 국경 조치는 항만, 공항 및 국경에 위치한 관세청 네트워크를 통해 국세청(IRS)에서 처리한다. 소송절차는 민사 및 형사로 분류되는데, 민사 소송의 경우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소송 또는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표에 대한 침해무효소송은 행위 자체를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며, 연방법원 관할에 속한다. 형사법 위반에 대한 사항은 산업재산법(BIPA)에 표시되며 3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 및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명시한다.

페루는 중남미지역 및 태평양 연안 국가에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평양동맹⁵⁹⁾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⁶⁰⁾의 회원국이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회원국 내의 거래에서 많은 유동성을 창출한다. 2018년 페루는 싱가포르 조약을 통해 WIPO에 가입하여 회원국들이 페루에서 상표를 보다 쉽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의 목적은 상표나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단순화하여 더 많은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페루 현지에서의 상표 집행 위한 행정 소송은 페루의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보호청(INDECOP)⁶¹⁾에서 수행한다.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사 법원의 청구를 통해서만

59) Pacific Alliance - 태평양 연안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 공동체. 2012년 6월 멕시코·칠레·콜롬비아·페루 4개국 간의 자유무역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와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결성

60)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

얻을 수 있다. 침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벌금 및 즉각적인 침해행위 중단이 선언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최초의 형사 법원에서 사법 소송이 처리된다. 국경 조치는 세관 당국이 처리하며 자체 관세법에 따라 처벌하는 자율적 통제 기관이다.

61) the Commission of Distinctive Signs of the National Institute for the Defense of Competition a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V. 칠레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보호 현황

1. 칠레의 지식재산권 현황

나날이 치열해지는 국제사회의 경쟁구도를 볼 때 세계 각국은 교역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점차 경제 블록화 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 블록화란 회원국 간의 장벽을 철폐하여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입 관련 교류를 자유로이 하여 시장에 대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다. 또한, 국가 간에는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여 상호 교역에 부과되는 세금이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교역을 증진하기도 한다. 칠레는 2018년 11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도 FTA 협정을 체결하는 등 세계 여러 국가들과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역량 확대에 따른 불법 위조나 불법 유통과 같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2019 Special 301 Report』는 무역관련 불공정거래정도를 따져 우선감시대상국과⁶²⁾ 감시대상국으로 나누어 발표하는데 칠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3국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어있다. 또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감시대상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에 대한 보고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감시대상국에 속하는 국가들 중 칠레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칠레는 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칠레 FTA)에 따라 지식재산권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올해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많은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에 있어서는 여전히 오래된 심각한 시행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 칠레는

62)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988년에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를 근거로 중간 정도의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지정한 국가를 말한다. 미국 종합무역법은 불공정거래의 정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PFC)과 우선감시대상국(PWL) 그리고 감시대상국(WL)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선감시대상국이 되면 우선협상대상국처럼 직접적인 무역보복조치를 받지 않으나 지속적인 관할과 조사가 따른다.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지정은 미국 종합무역법에는 근거규정이 없으며, 미행정부가 편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자체의 슈퍼 301조 운용내부 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매경시사용어사전)

암호화된 프로그램 운반 위성 신호의 도난에 사용되는 디코딩 장치의 수입, 상용화 및 배포에 대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우리는 여전히 칠레가 법 시행에 있어 모든 형태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또한 칠레가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운반하는 위성신호를 불법적으로 해독하여 의도적으로 수신하거나 배포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나 구제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난 위성신호 관련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권리 소유자 및 위성 서비스 제공업체가 효과적인 행정 및 사법 절차만이 아니라 이를 억제할 정도의 구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다.

칠레는 또한 기술보호조치(TPMs)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지해야한다. 미국은 칠레가 새로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91)에 대한 1991년 조항을 비준하고 시행하여 식물품종보호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칠레가 의약품 판매신청과 관련된 특허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의약 제품에 대한 마케팅 승인을 얻기 위해 생성된 비공개 테스트 또는 기타 데이터의 부당한 상업적 사용과 무단 공개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인터넷 불법 복제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책임 프레임 워크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그 외에도, 2018년 칠레 보건부는 결의안 399호를 발표했으며, 이 법안은 C형 간염 치료에 사용되는 특정 특허 보호 약물에 대해서 정당한 공중 보건상의 이유가 있다면 강제실시권을⁶³⁾ 설정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비록 칠레는 강제실시권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결의안은 강제실시권 설정 후 제3자 측에서 요청한 경우에만 초기에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칠레가 강제실시권 설정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서 투명성과 적법한 절차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지식재산시스템의 무결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합리적인 이용 약관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허가를 얻기 위해 노력한 후에만 강제실시권을 설정해야 한다. 2018년 칠레는 위조 방지를 위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관세청(National Customs Service)은 2018년에 총 1억 3천만 달러에 이르

63)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 : 공공의 이익보호와 특허권의 남용방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허락 없이 정부가 특허를 타인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정부의 허락으로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게 된 자의 권리를 의미함.(지식재산권 용어사전)

는 700만개 이상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고 보고했으며, 칠레의 지식재산전문 범죄수사단은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며 총 379,429건의 위조 상품을 적발했다. 국가 산업재산위원회(The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는 지속적으로 지식재산환경을 개선하여 2018년에는 특허 출원 처리의 평균 시간을 3.8년으로 단축했다. 위에 언급한 FTA 이행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UPOV 91의 시행, 잠재적 특허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 및 TPMs에 대한 잠재적 법률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미국은 지식재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칠레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고, 칠레와 FTA가 발효된지 15주년이 되는 2019년에는 이 분야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⁶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칠레가 정부차원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근절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법제가 충분히 완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 더 강화된 차원의 국제조약을 적용하지 않는 것, 집행단계에서의 엄정함이 다소 부족한 것과 절차 시행에 있어서 투명성이 부족한 것 등에서 개선할 점이 많다고 판단하여 여전히 우선감시리스트에 올려놓고 지속적인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

2. 칠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의 범주(범죄와 그 의미)⁶⁵⁾

위조 및 불법복제는 칠레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침해이다. 위조는 의도적으로 산업재산권을 위반하는 것으로 주로 상표와 관련된 것이며, 불법복제는 지식재산권 또는 저작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소유자의 허가 없이 상표 또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복사하는 것과 관련된 침해이다.

“해적행위“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등 관련 권리 소유자의 승인이나 해당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승인이 없이 특정 사용행위를 할 때 쓰이는 용어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해 작가, 예술

64) 2019 Special 301 Report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April 2019)

65) Delitos contra la propiedad intelectual. Juan José Rentería(Abogado UDP. Gerente General de MisAbogados)

가에 의해 창작된 지적 생산물을 정상적인 활용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들은 칠레 또는 원본이 만들어진 국가의 적절한 승인 없이 생성되어, 추후 해당국가에 배포될 시점에 권리자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한다. 불법 복제는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대규모로 수행될 때 특히 제재의 대상이 된다. 권리 소유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얻을 수 있는 공정한 보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활동에 특히 영향을 주는 저작물 등은 문학, 음악, 시청각 자료, 컴퓨터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데이터베이스, 라디오나 TV 방송 등이 있다.

지식재산에 관한 또 다른 주요 범죄로는 “위조”가 있다. “위조”라는 용어는 지식재산에 대한 범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 서비스 또는 시설에 대해 전혀 다른 브랜드이면서도 악의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처럼 만들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위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품으로는 의류, 향수 및 화장품, 완구, 담배, 지갑 및 명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표나 저작권과 같은 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집적회로, 산업디자인 및 도면, 실용신안, 지리적 표시나 원산지 표시 등도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 권리자는 법률이 제공하는 형사상 또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 재산권(상표, 특허, 실용신안, 레이아웃 체계 또는 집적회로, 산업 디자인 및 도면,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명칭)을 침해하는 경우엔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저작권 등이 침해될 경우엔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3. 칠레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⁶⁶⁾

○ 칠레에서의 불법 복제품의 압수 사례 증가

2019년 상반기 동안 칠레 관세청(National Customs Service)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상품 650만개를 항구 및 국경 지역에서 압수했다. 이

66) Comercio - ILÍCITO Y PIRATERÍA 불법복제와 위조(2019년 10월 3일 목요일판) 참고

수치는 2018년도의 같은 기간보다 무려 79%나 더 많은 수치이며, 이는 공식적인 상행위에 대한 불공정성과 직무 불안정 및 기관의 신뢰 상실을 야기하여, 미화 약 39.8백만 달러의 상업적 가치손실에 해당한다고 한다.⁶⁷⁾ 이 상황의 심각성은 무엇보다도 두 가지 영역에서 관찰된다. 첫째는 어떤 종류의 보증이나 지원, 승인도 없는 시스템 하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의 측면이고, 둘째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재정적 손실이다. 경제적인 영향이 매우 심각하여 부가가치세의 탈세만 해도 무려 6,290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연금개혁을 위한 비용, 교육자금, 세금 재분배 및 공공병원 지원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다.

2019년, 완구업계는 약 54%의 제품이 압수되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1월과 6월 사이에만 무려 6백6십만 팩이 압수된 담배가 뒤따른다. San Sebastián University의 경제 및 비즈니스 학부의 Francisco Aravena는 이 분야의 문제점 중 하나는 세금 미수금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배에 적용되는 세금은 담배의 소비로 인해 사회에 발생하는 외부성을 규제하려는 피구비안 세금⁶⁸⁾인데, 이 세금이 불법행위로 인해 지불되지 않으면 국가가 이에 대한 자금 집행이 어렵다는 측면 외에도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담배연기라는 부의 외부성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류, 신발, 액세서리 및 화장품은 항상 불법 거래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이는 신뢰성 없는 원재료가 밀수되어 만들어지는 상품이므로 일반적으로 피부, 눈, 손톱, 머리카락 및 신체 손상과 같은 건강과 관련된 위험이 있다고 한다.⁶⁹⁾ 2019년 5월에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단 (Investigative Brigade of Intellectual Property Crimes)에 의해 압수된 7,600개의 해적판 도서도, 2018년에 압수된 8,338건을 두고 볼 때, 출판 부문도 역시 위험군에 해당한다.

밀수로 제품을 들여오는 다국적 조직들로 인해 문제는 점점 더 장기화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불법 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전쟁의 대응 수단을 방불케 하며, 북부 매크로 존⁷⁰⁾에서 2018년에 생성된 집중단속

67)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CNC)인 Manuel Melero

68)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부성을 일으킨 사람에게 비용의 차이만큼 부과하는 세금. 영국의 경제학자 피구가 주장하였다. Pigouvian tax - 다음사전 참고

69) 화장품업계의 상공회의소 회장인 Álvaro Márquez

단위에 포함되었다. 이 법안들이 의회에서 승인되고 발효되면, 무엇보다도 불법 조직을 해체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규제하며, 노점상을 단속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분야는 국가 경제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분야이므로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 될 수 있다.

<2009년부터 2016년 사이 위조사건 발생건수 상위 10개 브랜드>

상표/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DISNEY	65	119	93	42	37	42	70	58	526
NIKE	22	64	48	43	42	39	51	73	382
ADIDAS	36	60	45	45	43	39	34	54	356
HELLO KITTY	36	68	40	46	21	21	20	62	314
LOUIS VUITTON	26	97	57	64	11	5	11	18	289
SAMSUNG	-	8	10	26	25	55	50	39	213
PUMA	33	30	22	17	12	16	6	16	152
BEN 10	32	48	25	9	13	9	2	13	151
SPIDERMAN	23	22	10	6	11	5	15	27	119
LACOSTE	23	48	22	6	9	4	1	3	116

<칠레특허청(INAPI) 사이트 참조>

<2009-2016년 압류된 상품의 가치(미국 달러)>

※ 압류된 상품의 가치는 원본인 경우의 상품 가치이며, 위조품 또는 불법 복제품은 원본의 10분의 1 가격으로 산정된다.

연도	상품가치(US달러)
2009	88,339,528
2010	54,545,333
2011	73,636,207
2012	81,778,420
2013	74,574,872
2014	29,623,145
2015	45,420,881
2016	39,693,407

<칠레특허청(INAPI) 사이트 참조>

70) 북부 매크로 존(Macrozona Norte) - 교육 품질을 위한 지역별 관리 사무소이며, 전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의 다양한 작업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단체.

○ 통제와 제재의 강화를 통한 범죄 대처

민간 부문, 경찰, 지방 당국 및 검찰청, 행정부 및 입법부 모두 공감하는 바는, 불법 복제와 거래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며, 그 뒤에는 관리시스템을 교묘히 피해가는 범죄조직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률을 개선할 필요도 있지만, 민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이 문제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 국가에는 지식재산, 산업재산 및 이익의 남용과 같은 범죄를 제재하는 법률이 있다. 이와 동시에 불법거래나 불법복제에 대응하는 법안도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거의 9년 동안 의회에서 침묵하고 있다가 2018년에야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승인된 법안은 지식재산의 침해에 대해 처벌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경찰이 불법거래를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절차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노점상을 단속하기보다는 불법 유통망 자체를 와해하는 것과 불법 활동을 제공하는 범죄조직의 소탕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당국의 통제가 공허하다고 주장도 있다. 당국은 불법거래의 중심지가 어딘지 알면서도 단속하거나 압수하는 등의 활동대신에 단지 상점에서 유통되는 브랜드가 등록되었는지의 여부에만 관심이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청, PDI 및 경찰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부여된 권한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점점 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이러한 분야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에 대한 전문교육의 지원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감사 결과에서 보듯이 IT 및 기술 부문에서는 더 많은 기술적 발전이 동반되므로 기업은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논의되어야 할 측면은 불법 행위에 대한 형벌의 증가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통신법을 예로 들어보면, 2018년 말에 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해독하여 상업화 및 배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이 법률이 수정 공포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구현되는 경우가 없어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관할 당국과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위법행위에 가담하는 자들에 대한 징역형

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마찬가지로 창고나 상업용 시설에 대한 제재는 밀매가 자행된 곳의 소유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전가하고, 향후 그 지역에 대한 교차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중남미 지역에서의 유료 TV의 불법 복제 손실

문화적, 오락적 또는 교육적 콘텐츠가 없는 현대 생활은 실제로 상상할 수 없다. 디지털 생태계, 멀티 플랫폼 및 멀티스크린의 개발 덕분에 모든 것이 우리의 손끝에서 펼쳐지고 있다. 문제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쉽고 빠르게 확장될수록 문화, 광고, 유통 등의 제작자, 감독, 영화 제작자 등의 저작권을 불법복제로 침해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 또한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의 ALIANZA 유료 텔레비전 불법 복제 방지에 대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1,142백만 달러의 세금이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탈루되어, 사람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재정적인 손실과 그것이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몇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볼 때, 칠레에서 불법 복제로 징수하지 못하는 세금 액은 약 4천 2백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2,723개의 사회복지, 3개 이상의 학교건설 및 소방청 연간재정 예산의 약 70%에 해당할 정도라고 한다. DIRECTV의 외부 업무와 규제를 관리하는 담당자에 따르면, 불법복제 행위는 사람과 지역 사회 모두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힌다고 한다. 왜냐하면, 품질에 대한 보증도 없고,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개인정보를 유출시킬 위험에 노출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국가가 정당하게 확보할 세수를 누락하게 하여 직접적인 사회보장건설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사업국의 조사에 의해 지원되는 ALIANZA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약 8억 8천만 명의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료 TV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 중 27%는 불법복제를 통해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한다. 한편 온라인 형식의 유사한 보고서인 NetNames에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남미지역에서 약 1억 1천 1백만 명 정도는 불법 복제된

시청각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 부문에서 생산할 수 있는 품질, 양 및 다양성에 명백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민간과 공공부문은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할 필요성이 명백해졌다.

공공정책의 역할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준을 설립하고 공정한 경쟁이 추구하게 하여, 이로써 시장이 적절히 발전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불법복제품의 소비는 종종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적으니까 합법적인 방식으로 콘텐츠를 이용하기 힘들다든가, 지리적인 문제로 해당 콘텐츠에 정상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다든가 하는 편견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편견이다. 오늘날 불법복제에 대한 암묵적인 수용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훨씬 더 용이해짐으로써 칠레사회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액세스 및 사용에 관한 9차 서브텔 설문조사(la Novena Encuesta de Accesos y Usos de Internet de Subtel)에 따르면, 일반 가구의 87.4%가 불법복제물과 연결되어 있고 그 중 91.5%의 모바일 장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불법복제물과의 전쟁은 국가가 당면한 도전과제이다.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불법복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절실하다.

○ 불법거래 및 복제에 영향을 받는 분야

이러한 범죄 활동의 전개는 소프트웨어, 장난감 및 화장품, 담배 및 유료 TV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담배는 연간 5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 2019년 상반기 동안에만 약 2,58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6,600만 팩의 담배가 관세청(el Servicio Nacional de Aduanas)에 의해 압수되었다. Illicit Commerce 관측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소비되는 담배의 약 23%가 불법거래로 인해 발생하며, 세금징수의 누락으로 인한 재정 피해는 연간 약 5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칠레에서 27,000곳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는 브리티시 아메리칸 담배의 업무 담당 매니저 인 Felipe Bustos는 “이

수치는 칠레가 불법 담배거래를 가장 많이 하는 남미국가 중 하나라는 얘기이며, 브라질을 앞서는 수치다” 고 말했다. 이들 경영진에게 있어서 칠레에서 담배밀수와 싸우는 것은 사회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재앙을 뿌리 뽑는 것과 마찬가지로 뜻이다. 5월에 세금징수청(EI Servicio de Impuestos Internos)는 담배에 대한 세금추적 시스템을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담배에 대한 정보를 얻어 위조품을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세금 포탈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상공회의소는 이 범죄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칠레에서 주로 불법적인 유통이 일어나는 품목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담배: 지난 7년간 담배의 불법유통이 6배나 증가했다.

칠레에서 담배의 불법유통은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는 그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National Commerce Chamber와 British American Tobacco의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의 불법유통은 칠레에서 약 23.3%를 차지하며 지난 7년 동안 6.5배가량 성장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시내에서 이런 불법 유통이 가장 크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증가폭은 칠레 북부지역이 가장 컸다.

라틴아메리카의 공공안보 문제에 대한 전문가인 Lucia Dammert에 따르면 불법 유통은 엄청난 사회적, 환경적, 보건상의 비용을 요구하며, 통제와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런 불법유통은 마약 밀매에서 인신 매매, 위조지폐 문제, 국경 간 강탈에 이르는 문제까지도 야기하기 때문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각종 범죄조직이 통합되고 국제화되고 있다.

이는 돈세탁이 발생하고 범죄가 정치에 침투하는 메커니즘이 증가하면서 거품 경제로 발전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불법적인 담배의 유통과 소비가 칠레사회에 정착된다면 관련 범죄조직이 “사회적 지원”을 빌미로 국가 조직에 침투할 수도 있다.

- 완구: 장난감들의 거래에서도 주로 불법적 거래가 많았다.

칠레에서의 완구판매는 상품화 활동이 특히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어린이날(8월)과 성탄절(12월)에 주로 복합 상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이루어진다. 칠레는 미성년자의 안전을 위해 건강법에 “완구안전 규정”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납, 붕소 및 툴루엔과 같이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완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관세청, 경찰 및 수사관들은 완구의 판매량이 높은 시기에 불법 복제 제품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지만, 불법유통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장난감 위조는 여전히 매우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CMC(La Cámara Nacional de Comercio, Servicios y Turismo: 전국 상공·서비스·관광 회의소)회장인 Manuel Melero에 따르면 상반기 압수된 위조 상품의 54%는 장난감이라고 한다. Iquique지역의 세관은 올해 어린이날의 하루 전날, 북부 지역에서 판매될 예정이었던 116,800 개의 위조 완구를 포함하는 315개의 꾸러미가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압수했는데, 이것은 관세로 환산하면 약 63,213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55%에 달한다.

BSA(Software Alliance)에 의해 수행된 2018년 세계 소프트웨어 관련 조사에 따르면, 요즘 설치된 3개의 소프트웨어 중 1개는 불법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해당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 50일이 소요되며 건당 비용도 약 2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칠레는 과거에 비해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비율을 2% 가까이 줄였지만 여전히 55%에 달해 세계 평균 37%보다 높다. 이와 관련된 기업으로는 컴퓨터,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나 실행 표준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해당된다. 칠레에서 특히 많이 복제되는 소프트웨어로는 워드프로세서, 바이러스 백신, 운영체제 및 표계산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법률 제17,336호에 의해 보호되며, 각 기업은 국제표준 ISO27001을 기반으로 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정책을 만들고, 보안 책임자는 그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 정보의 통제와 위반 시 폐기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 화장품: 밀수입 액은 미화 약 5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화장품 산업 회의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화 32억 달러 이상이 단지 소매상에서만 판매된다고 한다. 그러나 협회에 따르면, 더욱 암울한 상황은 이 위조품의 대부분(90%)이 중국에서 수입된 상품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칠레에서 한 해 동안 밀수되는 화장품은 미화 5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탈세되는 세금은 이미 미화 1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밀수되는 화장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메이크업용 화장품이며, 향수와 어린이용 화장품이 그 뒤를 잇는다. 화장품 부문에서의 불법 밀수거래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기업은 판매를 30%나 줄였으며, 밀수품들은 당국이 요구하는 위생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피부, 눈, 손톱 및 머리카락의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들 밀수품들은 인증되지 않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검증되지 않은 장소에서 영성하게 만들어진 제품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절차의 추진이 필요하리라 본다.

- 방송: 불법 복제

통신사무국(La Subsecretaría de Telecomunicaciones)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칠레는 유료 TV서비스 사업에 총 3,314,287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자로는 VTR(32.6%), DirecTV(20.3%) 및 Telefónica(18.8%) 등이 있다. 이 분야는 해마다 성장하고는 있지만 디코더와 안테나의 발달에 따른 불법 복제의 위협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DirecTV의 외부 및 규제 담당 이사인 Catalina Achermann은 이런 행위로 인한 세금포탈은 미화 4천 2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물론 기술의 발전 덕분에 불법 전송을 감지하는 방법도 개발되었다. 바로 특정 방송에 대한 불법전송의 웹 추적자를 통해서다. 방송이 불법적으로 복제되어 전송되는 것이 확인되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를 차단하라는 통지를 보낼 수 있다. 방송업체인 VTR의 관계자는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위성신호 디코더나 불법

IPTV상자” 와 같이 위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물품 자체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가장 많이 반입 중단된 상품 9가지 유형>

상품의 종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의복	135	256	162	99	91	71	72	69	955
장난감	45	78	105	60	71	91	138	126	714
가방류	56	147	76	68	20	16	26	33	442
신발	34	67	55	51	37	25	49	76	394
휴대전화 액세서리	13	30	35	46	39	40	44	45	292
시계	19	132	28	31	9	6	17	19	261
선글라스	21	50	42	54	36	36	7	4	250
모자	9	72	44	31	26	20	11	18	231
전기용품	10	23	36	116	26	17	-	-	228

<칠레특허청(INAPI) 사이트 참조>

<가장 많은 수량의 위반상품 10가지>

상품의 종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배터리	116,633	-	201,024	6,340,000	325,000	29,230	-	-	7,011,887
장난감	597,206	565,048	430,130	457,986	764,156	761,277	1,149,756	1,517,410	6,242,969
의복	1,163,710	1,490,853	1,991,291	323,390	130,863	214,392	87,685	295,823	5,698,007
휴대전화 액세서리	-	41,273			14,538	51,281	237,800	426,597	771,489
신발	-	138,412	189,819	45,919	206,725	34,329	56,428	92,732	764,364
선글라스	-	-	81,427	169,450	1,609	342,214	9,494	4,925	609,119
가방류	124,324	49,073	71,037	-	37,990	5,540	72,836	51,658	412,458
모자	-	-	-	-	10,000	16,178	52,110	65,072	143,360
전기용품	-	-	-	68,804	-	310	5,874	56,602	131,590
시계	-	44,270	26,598	-	1,095	1,111	7,385	61,039	141,498

<INAPI 사이트 참조>

○ 불법 복제로 인해 사용자가 지불하게 되는 비용

불법적인 통신 서비스의 사용과 유료 TV 방송의 해킹 증가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품질 개발 등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불법 복제로 인한 칠레의 국가적 경제 손해액은 연간 4천2백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인터넷과 텔레비전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품질을 악화시키는 비용은 제외한 수치다. 오늘날 시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 복제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형태 중 하나는 전형적인 형태의 중독증상이다. 이는 범죄에 해당되는 것 외에도 고객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편, 불법 IPTV 수신기는 최근 몇 년간 대중화되어 스트리밍을 통해 콘텐츠를 볼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복사한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도 한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개인정보의 유출이다. 이런 문제를 감안할 때,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수 없다. 칠레 국민들은 불법적인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늘어날수록 콘텐츠 제작 환경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 사실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 제품의 불법 복제에 대응하는 혁신

디지털 혁명은 기업과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왔지만 불법 거래도 증가 시켰다. 방법은, 어떤 형태의 보증도 없고, 세금도 내지 않으며, 전문가들조차도 감지하기도 어려운 전자 상거래의 확산을 통해서다. Facebook과 Instagram에서 담배나 의류와 같은 모든 종류의 밀수품들이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은 이러한 불법행위와의 싸움에서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CNC의 e-Verify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를 통해 제품이 SII (Internal Revenue Service)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관리 플랫폼을 의약품, 화장품 또는 장난감과 같이 불법복제가 많이 발생하는 다른 산업분야에 이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의 작동 방식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두 가지 코드를 통해 제품을 인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제품 외부의 코드이고 다른 하나는 개봉여부를 알리는 코드이다. 이 두 개의 코드는 상호보완적이며, 원본이 아니라면 판매자는 외부코드를 차단하여 더 이상 다른 사람이 구매할 수 없도록 알린다. 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ex, e-Verifica or Veritas QR)들은 정부 기관에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칠레 상표 특허청(INAPI)에서 상품의 소비체인을 추적하고 불법복제를 통제하는데 유용할 것이며, 세관에서

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의심스러운 품목을 선별할 수도 있다.

○ 블록체인

와인 및 식품 산업은 불법 복제 탐지에 중점을 둔 기술 도구의 이점을 얻었다. 지능형 QR 코드를 통해 와인의 원산지, 수확일, 저장 및 병에 담은 날짜를 알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도 개발되어 1,100만 병 이상의 와인이 추적되고 있다고 한다.

DocumentFlow는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또 다른 혁신제품으로서 오디오, 비디오 및 이미지 또는 디지털 파일의 적법성을 추적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블록체인의 분산회계기술(DLT)은 영구적이고 변경 불가능한 기록을 제공하여 비트레벨에서 그 제품이 진짜라는 증거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고 한다.

4. 칠레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시 구제방법⁷¹⁾

칠레에서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앞서 제시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침해자를 압박하여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에도 불구하고, 침해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지식재산 권리자는 형사소송에 의한 방법,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 국경조치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경우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다.

가. 형사소송⁷²⁾

○ 형사소송의 조건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산업재산권법 하에 보호하고 침해자에 대

71)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위원회 2008.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칠레) 150p.

72)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위원회 2008.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칠레) 151p.

항하여 형사 소송을 하고 싶다면, 산업재산권법 제2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거래 또는 무역 거래 시 반드시 등록상표에 “MR“이라는 이니셜을 기재하여 등록된 상표임을 나타내야 한다.⁷³⁾

○ 형사소송 절차

상표권자는 검찰(National Prosecutor Office)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으며, 검찰은 고소장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원고는 자신이 등록상표의 정당한 소유권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유명상표의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상표의 주지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침해자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하거나 기만할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즉, 원고는 침해자의 부당하고 부정직한 행위를 증명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고소나 형사조치가 없다면 검찰은 조사를 강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조 범죄는 물건의 원소유자와 침해자간에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재판부는 잠정적 조치(interim measure)를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잠정적 조치는 고소인의 요청에 의해 가능하다. 칠레산업재산권법 제112조는 상기 잠정적 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예방조치는 산업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모든 사건에 적용할 것이다. 다른 예방책에 손상을 주지 않고, 법정은 이하를 판결할 수 있다:

- a)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의 즉시 중지.
- b)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침해에 수반되는 물건과 그러한 침해를 행하는데 주로 소용되는 물질 및 수단인 몰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침해에 수반되는 부호를 포함하는 용기, 포장, 라벨, 인쇄물 또는 광고의 몰수는 특이한 부호의 경우에 판결될 수도 있다.
- c) 하나 이상의 회계 감사원의 임명.
- d) 임의의 방법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침해에 수반되는 물건을 광고하거나 판촉 하는 것에 대한 금지 및

73) Ley 19.039 (Artículo 25) : Toda marca inscrita y que se use en el comercio deberá llevar en forma visible las palabras “Marca Registrada” o las iniciales “M.R.” o la letra “R” dentro de un círculo. La omisión de este requisito no afecta la validez de la marca registrada, pero quienes no cumplan con esta disposición no podrán hacer valer las acciones penales a que se refiere esta ley.

e) 임의의 방법으로 그러한 물건의 판매 또는 상업화로부터 발생하는 물건, 금전 또는 귀중품의 제3자나 신용시설에서의 압류.」(제 112조)⁷⁴⁾

형사재판에서 처벌이 아닌 집행유예도 가능하며 이는 당사자 간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또한, 형사 처분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흔한 해결방안은 협상이다. 즉, 손해배상액, 책임소재에 대한 신문 상의 발표, 위조품 파기 등에 대한 쌍방의 합의다.

형사 소송에서 제1심 판결까지는 약 12개월 내지 18개월이 소요되며, 사건의 정도에 따라 3~4년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 최종 판결 또는 재판 전체를 무효화 하고 싶다면, 항소 법원에 판결무효소송(Annulment Recourse)을 제기할 수 있다.

○ 위조

칠레 형법(Criminal Code) 제190조는 위조(counterfeiting)의 범위와 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물건의 원저자가 아닌 다른 제조업자의 이름, 또는 실제 제조업자와는 다른 공장의 거래 명을 해당 물건에 기재하는 자는 누구든 61일에서 3년에 이르는 구금형과 6UTM⁷⁵⁾ 내지 10UTM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된다. 조금이라도 거짓되거나 변경된 이름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려는 상인이나 대리

74) Ley 19, 996 Artículo 112 : Las medidas precautorias procederán en todos los asuntos que digan relación con infracciones a los derechos de propiedad industrial.

Sin perjuicio de otras medidas precautorias, el Tribunal podrá decretar las siguientes:

- a) La cesación inmediata de los actos que constituyan la presunta infracción;
- b) El secuestro de los productos objeto de la presunta infracción y de los materiales y medios que sirvieran principalmente para cometerla. Tratándose de signos distintivos, podrá además decretarse el secuestro de los envases, embalaje, etiquetas, material impreso o de publicidad que posean el signo motivo de la presunta infracción;
- c) El nombramiento de uno o más interventores;
- d) La prohibición de publicitar o promover, de cualquier manera, los productos motivo de la presunta infracción, y
- e) La retención, en poder de un establecimiento de crédito o de un tercero, de los bienes, dineros o valores que provengan de la venta o comercialización de dichos productos, en cualquier forma.

75) UTM : 월간 세금 단위(UTM)는 칠레에서 세금 목적으로 사용된다.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매월 재조정되며, 1974년 법령 830의 제8조를 통해 시작됨. 처음에는 국세청(SII)에서 사용하는 벌금 및 규모의 지불에 대한 세금 측정으로 사용됨.(1UTM은 약 50,000페소)

인 또는 판매자 또한 동일한 형사 처분이 적용된다.] (형법 제190조)⁷⁶⁾

위와 같이 형법에서는 위조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칠레 산업재산권법 제28조에서는 위조를 중죄로 정의하고 있다. 형사 재판부는 형사 소송과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형사 절차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칠레에는 산업재산권 위조 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이나 사법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조 범죄에 대한 형사소송은 모든 형사 범죄를 취급하는 검찰과 Oral Criminal Court에서⁷⁷⁾ 관할한다.

나. 민사소송⁷⁸⁾

칠레의 민사 소송 체계는 유럽 대륙 국가, 특히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민사소송 체계와 유사하다. 사법부는 1심 법원, 1심의 판결의 재심하는 항소 법원 그리고 대법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심리는 최고 5년까지 진행될 수 있다. 민사 소송은 손해배상액을 통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소제기는 일반적으로 민사 법원(Civil Court)을 통해 이루어진다. 형사 법원(Criminal Court)을 통해 진행되는 형사 소송은 벌금과 구금 등 침해자에 대한 형벌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법원에서는 형사 소송과 함께 민사 소송 건 또한 다룰 수 있다.

개정 전 산업재산권법에 의하면, 산업재산권에 대한 거의 모든 침해는 형사 소송에 의하여 다루어졌는데, 이는 민사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유효한 민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모든 침해가 반드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특수하고 상세한 기준에 따라 명시적으로 규정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민사소송의 규정 마련이 필요했다. 2005년에 시행된 산업재산권개정법(Law N° 19.996)은 이러한 새로운 민사소송을 위한 법적제도를 구축하였다.

76) Ley 19.450. Artículo 120. : El que hiciere poner sobre objetos fabricados el nombre de un fabricante que no sea autor de tales objetos, o la razón comercial de una fábrica que no sea la de la verdadera fabricación, sufrirá las penas de presidio menor en sus grados mínimo a medio y multa de seis a diez unidades tributarias mensuales. Las mismas penas se aplicarán a todo mercader, comisionista o vendedor que a sabiendas hubiere puesto en venta o circulación objetos marcados con nombres supuestos o alterados.

77) TJOP(Los Tribunales de Juicio Oral en lo Penal)는 형사절차 개혁위에서 만든 칠레의 형사 법원으로 구술 재판에서 단순한 범죄에 대한 심리를 하고 경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예방적 석방과 구금 등에 대한 결정이 가능.

78)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위원회 2008.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칠레) 161p.

제106조: 산업재산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a)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중지
- b) 손해 및 손상의 보상
- c) 침해의 계속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수단의 채택
- d) 유죄판결을 받은 상대방의 비용으로 원고의 마음대로 신문에 공표함에 의한 판결의 공개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수단은 판결이 명백하게 규정할 때 적용해야 한다.」 79)

원고(상표권자 또는 특허권자)는 침해자가 침해로 벌어들인 이익과 원고가 침해를 통해 입은 손해에 대해 모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국경조치⁸⁰⁾

국경조치(border measure)란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세관의 통관 보류(유예) 등의 조치를 말한다. 국경조치 규칙의 효과적인 이행과 관련하여, 2004년 11월 8일자로, 칠레 세관과 산업재산권부는 칠레 시장으로 들어오려는 위조품의 세관 통과와 즉각적 중지 및 탐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의 교환 및 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러한 협정은 세관 검사의 새로운 전략적 계획의 일부이다. 또한, 세관과 같은 정부 기관에게 상표청이 관리하는 상표등록과 상표권자 정보에 대한 온라인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산업재산권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세관은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반입을 즉각 탐색하여 통관을 중지시키고, 침해품의 원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79) Ley 19,996. Artículo 106. : Artículo 106. - El titular cuyo derecho de propiedad industrial sea lesionado podrá demandar civilmente:

- a) La cesación de los actos que violen el derecho protegido.
- b) La indemnización de los daños y perjuicios.
- c) La adopción de las medidas necesarias para evitar que prosiga la infracción.
- d) La publicación de la sentencia a costa del condenado, mediante anuncios en un diario a elección del demandante. Esta medida será aplicable cuando la sentencia así lo señale expresamente.

80)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위원회 2008.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칠레) 169p. 2008년 자료이나 2017년도에 일부 개정 사항 반영.

○ 국경조치법 보호 범위

국경조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칠레 산업재산권법(Law N. 19,039)에 등록된 산업재산권
- 칠레 지식재산권법(Law N. 17,336)에 등록된 저작권 등의 권리 소유자

이들 권리의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조품의 세관 통관 보류를 관련 관할 민사법원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의 경우,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등록된 권리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해당 물품이 실제로 침해품이어야만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의 경우, 원저작자는 칠레의 지식재산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의 세관 통관 보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관할 법원은 수입업자가 물품의 통관을 요청하는 세관지역의 관할 민사 법원 재판소를 말한다.

○ 세관 통관 보류 절차

위조품에 대한 세관 통관 보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 청구인은 해당 권리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침해 또는 침해품임을 추정할 만한 선례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한다.
- 조치가 취해져야 할 거래 물품에 대한 설명 즉, 물품이 있는 지역, 예상되는 입항 지역, 물품이 신고 될 항구나 항공, 원산지 국가, 출항 지점, 운송 수단, 운송 회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통관 보류요청을 접수한 법원은 즉시 세관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를 명한다. 만약 통관 보류 신청이 결국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판사는 판사의 재량으로 수입업자, 물품의 원소유자 또는 인수자가 입은 잠재적인 손해에 해당하는 경비나 이와 동등한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침해 소송 기간

통관 보류와 더불어 청구인이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통관 보류 명령일로부터 10일이다. 침해 소송 착수가 지연되는 이유가 합당한 경우 청구인은 침해소송과 통관 보류유지를 위해 1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 재수출 금지

불법복제품이나 위조품은 재수출이 금지된다. 또한, 판사는 산업재산권법 또는 지식재산권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침해 물품을 청구인에게 인도하거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 세관의 직권 조치

세관의 직권으로 인한 통관 보류는 명백히 침해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세관의 직권에 의한 통관 보류의 최대 기간은 10일로⁸¹⁾ 단축된다. 세관은 직권으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관할 법원에 통관 보류명령을 신청한다. 이후 통관 보류조치가 이루어지면 세관은 권리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법률에 제정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청한다. 권리 소유자는 물품의 진위파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세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81) 2017년 3월 13일 국경조치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최대 5일에서 최대 10일로 확장됨

La suspensión del despacho que disponga la aduana en conformidad a este artículo tendrá un plazo **máximo de diez días hábiles**, transcurrido el cual, si no se recibiere notificación ordenando la mantención de la suspensión, se procederá al despacho de la mercancía de conformidad con el artículo 11.

VI.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해외활동 현황

1. 산업재산권⁸²⁾

가.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⁸³⁾

현재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IP-DESK를⁸⁴⁾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운영하고 있다. 중국, 일본, 미국과 동남아시아 및 일부 유럽지역 등에는 이미 설치되어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응하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⁸⁵⁾

지식재산센터의 주요 역할은 현지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을 분석하여 해당 국가 진출을 위한 적절한 상담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경쟁력에 해당하는 산업재산권의 확보를 위한 각종 출원(상표 및 디자인)을 지원하며,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를 당한 경우 실태 조사 및 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분쟁이 빈번한 KOTRA 해외무역관에 지재권 담당자를 배치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확대하고 현지 지재권 관련 공무원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등 진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IP-Desk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통한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나, 점차 교류의 비중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의 지재권 위반사태가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IP-DESK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K-브랜드 보호 기반 구축⁸⁶⁾

8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 annual report. 156p.

8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 annual report. 156p.

84) 현재까지 IP-DESK가 설치된 국가 -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독일,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홍콩, 필리핀(Kotra)

85) 특허청 홈페이지 자료 참고.

특허청에서는 중국이나 ASEAN지역의 K-브랜드관련 분쟁예방 및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로 중국 상표브로커에 대응하거나 중국 오픈마켓의 온라인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표브로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적절한 법적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피해 기업을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국의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위조 상품에 대한 신고 등을 대리하여 게시물 삭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및 예방 컨설팅⁸⁷⁾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해외 기업과의 지재권관련 분쟁이 예상되는 기업에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 컨설팅의 종류로는 수출 사전분석 컨설팅, 특허보증 대응 컨설팅, 라이선스 전략 컨설팅, 상표 해외 현지화 전략, 무단 선등록 대응전략 등이 있다.⁸⁸⁾ 이 컨설팅의 목적은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대응책을 마련, IP권리 침해 여부 확인 및 분쟁 예방과 해당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 전략 제공 등이다.

또한, 특허청은 분쟁 예방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지재권 분쟁 이슈에 대하여 수요자 자율선택형 지식재산 보호 서비스 지원체계를 새롭게 마련하였다.

라. 기타 지식재산권분쟁 대응관련 활동⁸⁹⁾

이 외에도 공통된 지식재산 분쟁현안에 대해 해외진출 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활동”,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획부터 수익단계에 따라 특화된 지식재산 보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한류

8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 annual report. 158p.

87)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 annual report. 160p.

88) 한국지식재산 보호협회

89)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 annual report. 162p.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 및 재외공관에서의 “현지 지식재산 침해 예방·대응 지원 강화활동” 등을 들 수 있다.

2. 저작권⁹⁰⁾

가. 해외 저작권센터 운영

한류문화 열풍이 확산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주요 한류 전파지역에서의 우리나라 기업 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와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저작권 보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에 해외저작권센터(Copyright Center)⁹¹⁾ 설치·운영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시장 진출을 위한 상시 지원체계를 강화해왔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콘텐츠 해외 진출 전략에 맞춰 해외저작권센터 거점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불법 유통과 관련한 상담, 법률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나. 기타 저작권 보호 활동

문화체육관광부는 합법유통 협력 교류회, 합법이용 계약 지원, 저작권 인증서 발급, 현지 저작권 등록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해외 저작물의 합법적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저작권 보호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로 서버를 옮겨 운영하는 불법 해외 사이트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⁹²⁾

9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 annual report. 165p.

91)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9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 annual report. 169p.

국가정보원은 산업스파이로부터 첨단기술과 경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밀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첨단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불법으로 해외에 유출하려는 산업스파이 적발, 방위사업청 등의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전략 물자의 불법 수출과 방산·군사기술의 해외 유출 차단뿐만 아니라 외국과 연계된 투기자본 등에 의한 경제안보 침해 행위와 인수합병을 가장한 기술유출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4. 신지식재산⁹³⁾

나고야의정서가⁹⁴⁾ 비준되면서 우리나라도 생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향후 종자 R&D 활성화, 종자 수출 확대 등에 따른 품종보호권 관련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종자원은 국내 육성품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국내 육성품종의 해외 현지 적응성 및 시장성 시험을 지원하고 있다.

9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 annual report. 170p.

94) 국가 간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됨. 생물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이익 공유, 적용범위, 의무준수 등 36개 조문과 1개 부속서로 구성됨.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8월 17일자로 발효됨.(지식재산 백과사전)

VII. 중남미 지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 대책

1. 기업별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전략⁹⁵⁾

만약 기업이 어떤 분야에 대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잘 계획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래 각 기업의 상표, 디자인, 영업 비밀, 발명 및 창작물 등은 이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자원과 노력을 투자하여 개발한 만큼 이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경쟁사가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마찬가지로 자원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자산을 제3자가 아무런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이를 지식재산권 침해로 규정한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면 이를 소유한 기업은 단계별로 행동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침해된 지식재산권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침해자, 침해 업소, 잠재적 협력자 및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찾는 것이다. 침해자들은 종종 실마리를 남기지 않으려 무척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매우 복잡한 유통망을 통해 원하는 시장에 잠입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세 번째로 침해의 성격, 출처 및 범위가 파악되면 기업은 비즈니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는 단순히 판매량 감소 정도의 단순한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소득의 감소와 시장 점유율 손실은 물론, 이미지, 신용 또는 명성의 하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해당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유자의 능력, 즉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지식재산권이 명시적으로 침해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이에 대한 권리를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종류의 지식재산권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은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막으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침

95) Revista de la OMPI/ene.-feb. de 2004

- CÓMO LUCHAR CONTRA LAS INFRACCIONES DE LOS DERECHOS DE PROPIEDAD INTELECTUAL

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식재산권 침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기업이 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기업의 운명을 운에 맡기는 것과 같다.

특히,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되면 외국기업과의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의 우려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단순한 위조나 불법유통의 문제만이 아니라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 관련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파트너와 계약할 때도 그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내역은 물론 위반할 경우의 절차도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여전히 경쟁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모방, 복사 또는 침해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체 없이 법에 호소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경우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더 적합한 솔루션이 있는 경우가 많다.

각 기업은 침해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골치 아픈 일들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업 비밀의 도난을 막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코드나 암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품 자체에 상표, 저작권, 산업 디자인 또는 특허권과 관련된 언급을 할 수 있다. 또한 직원이나 관련자 모두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침해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업은 침해된 지식재산권의 장점과 가치를 전략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가능성과 대응 수단을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침해자와 직접적인 파트너 관계를 맺거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등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시장에서의 변수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며,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우려 또한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확하고

분명한 침해 방지 전략을 설립하여 매뉴얼화한다면 침해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훨씬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침해에 대응하기 전에 기업은 비용-이익 분석을 기반으로 가장 효과적인 관련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한다.

-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다. 즉 소매상뿐만 아니라 생산자 및 주요 유통 업자가 누구인가를 식별한다.
- 침해에 대한 범위를 설정한다.
- 침해문제가 지금보다 악화될 수 있는지 고려한다.
- 침해로 인해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직간접 손해의 크기를 계산한다.

즉, 침해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기업은 침해에 대응할 때의 비용과 이익을 분석해야 한다.

자사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됐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침해를 단순히 예의 주시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의 판매량이나 판매수익의 손실이 크지 않고 앞으로도 그 손해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평판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간주되면,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들이지 말고 차라리 “용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반대로, 침해의 규모가 중대한 경우, 기업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침해자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침해소송을 할 경우에 소송에서 이길 확률, 침해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액은 물론, 최종 결정이 유리하더라도 소송에 따른 비용 상환 가능성 등도 평가해야만 한다. 또한 소송에 휘말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계약한 회사(예: 라이선스 계약)에 불만이 있는 경우 첫 번째 단계는 계약내용에 조정이나 중재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높은 비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특별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⁹⁶⁾ 계약에 이런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체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그러한 절차에 따르기로 동의하는 경우).⁹⁷⁾

기업은 제3자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식하면, 혐의가 있는 침해자에게 해당 활동이 해당 지식재산권과 서로 충돌(구체적 위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하고 있음을 서한을 보내 경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일반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침해인 경우에만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침해자가 그 활동의 위법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반사실에 대해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침해행위를 중단하거나 적법한 행위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 협상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다른 경우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때로는 기습적인 조치가 최선인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침해자에게 침해의 사실을 알릴 경우, 증거를 숨기거나 파괴할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감지된다면 “사전예방통지” 없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기습적으로 침해자의 상업 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소송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침해가 의심되는 자들에게 재판이 끝날 때까지(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음)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런 조치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기습적인 단속으로 인해 혐의가 의심되는 증거를 수집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침해자로 하여금 침해행위에 관련된 자나 유통 채널을 공개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향후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침해 제품을 강제로 파괴하거나 압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침해자에 대한 민사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다. 민

96)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지재권 실무를 위한 IP Business 계약서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으므로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시에 쌍방의 협력범위나 책임내용 등을 확정하고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다.

97) 조정이나 중재에 대한 내용은 arbitrator.wipo.int/center/indexes.html에서 조정이나 중재 관련 내용 참조

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행하는 것이 좋다.

- 지식재산권이 존재하고 그 권리를 소유한 경우
- 해당 지식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절차진행 비용을 초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은 침해를 당한 지식재산권 소유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손해에 대한 배상, 수익의 청산 및 지식재산권 보유자에게 침해 제품을 제공하라는 등의 법원 명령이 있다. 지식재산권 법률에는 침해 대상물의 제조 또는 마케팅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될 수 있다. 위반할 경우의 처벌은 벌금에서 구금까지 다양하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국가별 의무이행 조치를 도입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은 등록상표 및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제품에 대한 사전통지를 제출하여 세관 당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통지가 제출되면 세관 당국은 상표 또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제품의 위조품을 압류할 수 있다.

물론 침해를 당한 기업은 침해나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정식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지식재산권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비용대비 최고의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오늘날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수출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디지털 제품, 서비스 및 문화 콘텐츠도 점점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침해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불법적인 유통범위도 국제적으로 확산됨에 딸 지식재산권 침해상황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침해를 가능한 빨리 감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 중남미 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역량 제고⁹⁸⁾

가. 중남미 지역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예방과 대응 강화⁹⁹⁾

중남미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이 지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또한 수없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Special 301보고서에 따르면 칠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3국은 지식재산권 침해사례가 많아 우선감시대상에 해당되며, 그보다는 낮지만 감시대상에 해당되는 중남미 국가는 멕시코와 브라질을 포함해 무려 10개국에 이른다. 하지만 현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를 얻는 게 쉽지 않다.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는 IP-DESK는 중국, 동남아, 유럽 및 미국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아직까지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단순히 현재까지의 교역량으로만 볼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의 대한민국의 인지도가 향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위해 임시적인 지식재산권 교육이나 설명회를 개최하는 수준으로는 향후 발생할 침해에 적절한 대응을 실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선도국가를 선정하고 그곳에 IP-DESK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이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외공관과 상시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현지에서 발생하는 침해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이 지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지의 지식재산권과 현지의 침해 상황 등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구의 설립과 우수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나. 해외 상표 브로커의 상표 무단 선점 대응 및 국경조치 확대¹⁰⁰⁾

98)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 annual report. 199p.

99)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 annual report. 199p.

10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 annual report. 199p.

우리기업의 브랜드가 해외에 널리 알려지고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됨에 따라 해외시장에서의 우리기업 상표에 대한 무단 선점이나 불법 복제 활동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침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우리 브랜드를 모방한 악의적인 선점 의심상표를 출원단계에서 모니터링 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과 베트남 지역에서 우리기업의 상표를 무단 선점하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 주요국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2019년에만 중국에서 총 738건의 상표가, 베트남에서는 총 66건의 상표가 무단선점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에서도 점차 상표의 무단선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⁰¹⁾

특허청은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인 IP-NAVI(www.ip-navi.or.kr)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의 상표 무단선점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해당 기업과 공유하며 각종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이를 기업의 자체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선점이나 모조품이 불법으로 유통되면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고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우리 문화가 널리 알려질수록 중남미 지역에서도 상표 브로커가 등장하여 이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중남미 지역에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에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당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 한류 부당편승 대응과 한국 브랜드 보호의 강화¹⁰²⁾

한국산으로 둔갑한 가짜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브랜드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가 상승할수록 산업 전 분야로 확산

101) 우리기업 상표 무단선점 감시 모니터링, 아세안으로 확대(보도자료) - 2020. 2.13. 산업재산보호지원과

10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 annual report. 200p.

될 우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 최대의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닷컴에서 한국산으로 둔갑한 가짜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이¹⁰³⁾ 있을 뿐만 아니라 한류열풍이 거센 베트남 지역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 제품으로 둔갑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¹⁰⁴⁾ 전해진다.

이런 행위는 한국 상품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훼손하고 한국 브랜드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국산 제품의 수출 실적마저 감소시킬 수 있다.

특허청은 한류와 관련된 유통기업 실태조사 및 해당 국가에 대한 법률 검토와 같은 조치를 취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국가기관에 단속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해당 기업들과 연계하여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활동을 전 세계로 확장하여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우리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부처, KOTRA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위조 상품을 단속하거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각종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중남미 지역의 저작권 보호지원¹⁰⁵⁾

한류가 확산됨에 따라 한류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각종 한국 드라마가 중남미 대륙에서 상영되고 K-POP에 대한 인기도 나날이 상승함에 따라 한류 콘텐츠에 대한 불법적인 유통 또한 증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서비스의 원활한 확대를 위한 중남미 지역의 거점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

103) 2020년 3월 30일자 세계일보

104) 소비라이프뉴스(<http://www.sobilife.com>) 2019.8.23.

105)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 annual report. 200p.

남에 해외저작권센터(Copyright Center)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시장 진출을 위한 상시 지원체계를 강화해오고 있으나, 한류 콘텐츠가 성장하고 있는 신흥 시장인 중남미 지역에도 해외저작권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중남미 지역 저작권 보호의 거점으로 삼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 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대상국 공무원 등을 상대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 저작권 관련 기관에의 연수 등을 추진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저작권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여 우리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한류의 확산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중남미 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취약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꾸준하게 보호절차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디지털 환경의 발전에 따라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에 대처하려면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에 신기술에 대응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저작권 무역 수지 추이>

(억 달러) 출처: 한국은행

구 분	2010	2011	2013	2015	2017	2018	2019
저작권 수지	-8.8	-5.0	0.2	6.8	5.9	14.7	16.2
문화예술 저작권	-7.77	-6.1	-8.1	-2.9	-4.1	-2.9	-1.8
연구개발 및 S/W저작권	-1.0	1.2	8.3	9.6	10.0	17.6	18.0

<저작권 무역 수출입 추이>

(억 달러) 출처: 한국은행

구 분	2010	2013	2015	2017	2018	2019
저작권 무역수입	17.7	26.5	34.1	52.5	65.7	70.1
저작권 무역수출	8.9	26.7	40.9	58.4	80.4	86.2

※ 한국은행이 그간 발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저작권 수입은 2010년 총 17억 7천만 달러에서 2019년 총 70억 1천만 달러로 약 3배가 증가한 반면, 저작권 수출은 같은 기간 동안 총 8억 9천만 달러에서 86억 2천만 달러로 약 8.6배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영국, 일본 등 콘텐츠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상대로 한류 콘텐츠 수출을 꾸준히 늘려온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¹⁰⁶⁾

3. 결론

지금까지 칠레의 지식재산권법 및 최근의 법 개정 동향과 칠레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및 중남미 지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보았다. 이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대처와 중남미 지역에서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역량의 제고에 관해 언급해보았다.

위의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중남미(칠레) 지역에서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이 지역에 진출하려면 이 지역의 지식재산관련 법제도는 물론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칠레의 지식재산권 제도는 대한민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와 비교해볼 때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지라도 외관상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의 정치적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여기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칠레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처벌을 강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대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이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은 사전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어떤 지식재산권을 등록해야 하는지, 어떤 지식재산권이 침해의 우려가 높은지는 물론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기업과 계약관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 놓는다면 침해가 일어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필요 이상의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 확대가

106)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0.3.27. 우리나라 저작권, 역대 최대 규모 무역수지 흑자 달성

필요하다. 중남미지역에서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이 지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 등을 설치하거나 각종 단체나 컨설팅 등을 설립하는 것이다. 아직 IP-DESK나 저작권 센터 등이 중남미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중남미 지역의 국가들과의 국제협정이 늘어나고, 한류와 더불어 경제 문화적 교류가 증가한다면 그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지역의 지식재산권 관련 공무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문제점을 서로 인식하게 한다거나 국민적인 교감을 이루도록 장려하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기구를 통한 국가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식재산권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침해행위가 점점 정교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일단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무형적인 자산에 대한 손실을 특정하기 어려워 그에 대한 완전한 구제도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들과의 조화로운 협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08.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 (칠레)에 관한 연구.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18. IP- BUSINESS 계약서 가이드북.
- 박영사. 2016. 부정경쟁방지법 사례연구.
- 외교부. 2018. 9. 칠레 개황.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5.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9. 2018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 보고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러시아·중남미·중동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 미국 무역대표부. 2019. 스페셜 301조 보고서.
- 코트라(KOTRA). 2020. 2020 국별 진출전략(칠레).
- 하상섭. 2017. 라틴아메리카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수.

<참고자료>

- BIZLATINHUB. OCT 22.2019. How to Register, Manage and Enforce Trademarks in Latin America. by Team Latin America.
- INAPI-WIPO. MARCH 2013.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Chile.
- The Law reviews. August 2019. The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 Edition 8(Chile). Marino Porzio.
- LatinLawyer. May 16.2017. Intellectual Property Chile.
- 칠레 특허청. INAPI. Instituto Nacional de Propiedad Industrial - Chile.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
- la ley N^o 19.039, Ley de Propiedad Industrial.
- la ley N^o 17.336,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 la ley N^o 20.169, Ley de Competencia Desleal.